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

-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



| 일 시 | 2009년 12월 4일(금) 13:30~16:30
| 장 소 | 백범기념관 대회의실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 후 원 |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이상민

Program

사회: 배 대 섭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장)

좌장: 김 삼 섭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시 간	내 용
13:35~13:45	인사말씀 •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윤종술(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공동대표)
13:45~13:55	축사 및 격려사 • 안민석(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 이상민(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이규석(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제 1 부 자유 발언대	
13:55~14:15 (각 5분씩)	• (발달장애학생) “우리도 동등하게 교육받고 싶어요!” • (학부모) “장애아들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세요!” • (장애인 대학생)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기 싫어요!” • (장애성인) “그동안 단 한번도 교육받지 못했어요!”
제 2 부 발제 : 장애인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	
14:15~14:3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14:35~14:55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 도경만(충남당진송산초교 특수학급 교사)
14:55~15:10	휴 식
제 3 부 분야별 전문가 토론	
15:10~16:10 (각 10분씩)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교육권 •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 변화와 과제 • 김은주(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특수교육 행정적 지원 분야 토론 • 김성애(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 한경근(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법률 시행 이후, 2009년 교육현장에 나타난 주요문제들과 향후 과제 • 김효송(인천선인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장애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교 여건 변화 및 장애학생 교육권 변화 분야 • 유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16:10~16:30	질의 응답 및 폐회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과 전문가, 장애인가족,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국회 안민석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관하고 평소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전문가분들과 정부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관련 법령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그 효율적인 이행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되어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진일보할 수 있는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특수교육법은 장애영아에 대한 교육 지원,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제 도입,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와 편의제공 의무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확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 법들이 시행되면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적절한 교육지원과 교육기회를 향유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었고,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 된 이후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장애인 교육현장이 어떻게 개선되고, 장애인 교육권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 법들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지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이루어진 장애인 교육권의 개선과 관련정책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 교육권을 보다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 병 철**

● 인사말

장애인 교육을 고민하는 교수, 현장 특수교사, 특수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 장애자녀의 부모,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평생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성인 등 장애인 교육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안민석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7년 장애인계의 피와 땀으로,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이제 시행된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으로 많은 장애자녀 부모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안민석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등과 함께 한 법률 시행 이후 특수교육 여건 현황 조사 결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특수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으며,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만 제정되면 장애인 교육 현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했던 장애자녀 부모들 역시 학교 현장에서의 획기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법률이 시행된 지 1년 남짓 지난 상황이라, 갑작스런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무엇을 새롭게 해야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과 방향은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어떻게 확충시켜나가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이 이제 시·도교육청으로 모두 이양되었고, 최근 교육자율화, 학교자율화라는 방향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지침이나 후속조치를 수립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의

지를 갖고 장애인 교육을 잘 수행해 나가야한다며 장애인 교육에 관한 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은 아직 절대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릅니다. 아직도 장애인 교육은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학교를 짓고, 교사를 충원하고, 관련 시설·설비를 확충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고 장애인 교육을 시·도교육청의 책임으로만 미룬다면, 장애인 교육 환경은 더더욱 낙후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 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교육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와 같은 정부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장애인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4.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상임공동대표 **윤종술**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도 오산 출신 국회의원 안민석입니다.

먼저 오늘의 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그리고 국회 이상민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토론회는 장애인의 교육권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2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교육권을 침해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비장애인들은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 비용에 대한 핑계, 불편함의 이유를 들어 외면해왔을 뿐입니다. 그 외면 탓에 그 동안 수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 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전에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힘을 모아 소위 장차법과 장특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참으로 지독한 외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면을 “외면”이라 부르는 것도 어디까지나 “비장애인의 시각적 편의”일 뿐입니다. 이는 분명 외면의 수준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위법이고 위헌인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명시된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법을 외면이자 단순한 정서적 차별로 치환하여 인식하는 것 역시 비장애인이 고쳐야 할 심각한 오류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이러한 외면과, 위법과, 인식의 오류를 바로잡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마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겪는 부당함과 차별에 대한 아픔을 감히 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하는 식의 수사를 남발하며 뜯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명확하게 그간의 부당한 현실을 살피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도덕이라 하는 범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관련 단체와 국가인권위 현병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가 모이고 모여 조금씩 바뀌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여러분과 비장애인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러한 새 지평의 징후와 희망을 느끼고 돌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4.

국회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안 민 석**

● 축 사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 선택이 아닌 필수 장애인교육권 보장방안 시급히 마련되어야

40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인교육법의 제정 취지는 중앙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예산과 인력을 대폭 투입하고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교육지원들을 실현함으로써, 그동안 차별받고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의 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률 시행에 따른 책임을 교육 자율화라는 방침 아래 회피하고, 수십년 방치되어 왔던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실태조사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기관이 신·증설되고 특수교사가 확충되며, 장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복지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특수교육 현장은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는 57.8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특수교육 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역간 특수교육 여건 또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교육법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시행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인 교육 여건은 아직까지 지역별로 고르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열악한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책임하에 적극적인 지원과 특단의 정책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국회차원의 지원을 적극 모색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차법과 장특법의 시행 이후의 변화된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견 많이 내 주시고 실효성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장애인 교육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읍시다.

2009. 12. 4

국회의원,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 축 사

존경하는 안민석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통해 장애인의 요구에 적합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애 주기별 단계에 따른 교육지원을 위해 「제3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보장은 제도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관계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목소리가 아닌 함께하고자 하는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평생교육과 고등교육 지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0년에는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 깊은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4.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 규 석

목 차

<제 1 부> 자유 발언대

- (발달장애학생) “우리도 동등하게 교육받고 싶어요!”
- (학부모) “장애아들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세요!”
- (장애인 대학생)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기 싫어요!”
- (장애성인) “그동안 단 한번도 교육받지 못했어요!”

<제 2 부> 발제 : 장애인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5
김주영(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 ❖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43
도경만(충남당진송산초교 특수학급 교사)

<제 3 부 > 분야별 전문가 토론

-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교육권 109
조형석(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 변화와 과제 119
김은주(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
- ❖ 장애인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분야 129
김성애(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137
한경근(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 ❖ 법률 시행 이후, 2009년 교육현장에 나타난 주요문제들과 향후 과제 147
김효송(인천선인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 ❖ 장애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교 여건 변화 및 장애학생 교육권 변화 분야 159
유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제 1 부〉



자유 발언대

- (발달장애학생) “우리도 동등하게 교육받고 싶어요!”
- (학부모) “장애아들에게 특수학급을 설치해 주세요!”
- (장애인 대학생)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기 싫어요!”
- (장애성인) “그동안 단 한번도 교육받지 못했어요!”





〈제 2 부〉



장애인의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김 주 영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지난 2007년 3월 6일 장애인의 오랜 염원과 노력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즉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열흘 후인 4월 10일 법률 제8341호로 공포되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 두 번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크게 법의 목적·용어의 정의 및 개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담은 총칙(제1장)과 고용·교육·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6개 분야의 차별금지(제2장),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제3장), 장애인 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제4장), 손해배상·입증 책임(제5장), 벌칙(제6장) 등 총 6장 50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제한·배제·거부의 경험으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자존감을 잃고 나아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까지 떠안고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을 스스로 입증할만한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차별’의 ‘정체’를 계량화·형상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스스로 차별을 입증하고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불리와 소외에 처해있던 장애인들이 훼손된 자존감을 추스르고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이 법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08년 4월 11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제10조부터

제37조에 해당하는 각 차별영역에 규정된 세부내용별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은 해당규정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에서 정한 모든 교육기관도 2013년 4월 11일까지 단계적으로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차별은 주로 장애를 이유로 교육기관의 진입을 막거나, 학습기회와 참여를 제한하거나, 불리한 평가 환경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13조와 제14조에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고 있는 교육계의 변화는 그다지 감지되고 있지 않다. 대학들은 여전히 입학과정에서 차별적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초·중등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도 아직 법 시행에 따른 뚜렷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 이에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중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차별 유형의 변화를 살펴본 후, 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교육적 조치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법률의 구성과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관련 조항

가. 법률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 6장 50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제3조,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등 총 7개조에 교육관련 항목들이 규정되어 있다. 이를 장절별로 나누어 모두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교육관련 규정

부분			규정
장	절	조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6. “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차별금지	제2절 교육	제13조 차별금지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상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상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규정
장	절	조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모부성권 등	제28조 모부성권 차별금지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및 그 종사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에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규정
장	절	조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 장애여성 차별금지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제35조 장애아동 차별금지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임 규정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 공포된 후 1년간의 위임규정을 마련하였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위임 내용을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교육관련 위임 규정

법률	시행령(위임 규정)
제3조(정의) 6. ---<생략>---,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기관)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4.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생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표 2]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국·공·사립 특수학교
 -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각급학교
 -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제1호 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학교(제1호 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사립 각급학교
 -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제1호 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 라. 국·공립 보육시설 및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2. 차별과 교육차별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가. 총칙에 나타난 차별의 개념

1) 차별금지의 대상과 법 적용의 대상

이 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지닌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1항).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제3조 제20호). 또 이 법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기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말한다(제3조 제6호). 또 “교육책임자”는 위의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제3조 제7호).

2)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이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여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이것은 교육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공통 사항이다. 첫째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이다. 다섯째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인 관련자)에 대해 첫째 또는 넷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여섯째는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에 대해 넷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앞의 여섯 가지 차별행위 중 셋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한다. 그 하나는 위의 여섯 가지 규정에 의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특히 특별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입학사정 시 장애인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상담하는 경우와 같이 교육 등의 서비스에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3) 차별 판단과 차별금지 등

이 법에서는 차별을 판단함에 있어서 차별의 원인은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하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그러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제5조 제2항).

무엇보다 이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차별금지”라 할 수 있다(제6조). 그 내용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된다는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법의 법률적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으며, 법률의 성격을 집약하고 있다. 이후의 내용(특히,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은 모두 이 조항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정보이거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법에서는 장애인이 스스로 차별적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다(제7조).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누군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동등한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그 관계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며,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나. 교육 차별금지

이 법에서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13조). 먼저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입학을 거절하거나,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다 알기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과 전학에서의 차별

- 장애인이 그 교육기관에 입학하려고 할 때 장애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다른 지원자들과는 별도의 추가서류, 추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행위(법 제13조 제1항, 제7항)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강요하는 행위(법 제13조 제1항)
- 장애인이 전학해 오려할 때 해당 보육시설이나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이를 거절하는 행위(법 제13조 제1항)

둘째, 교육활동 참여에서의 차별

- 특정수업(예 :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등),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모든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배제·거부하는 행위(법 제13조 제4항)

셋째,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 등에 대한 차별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과 그 관련자(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수화통역사, 속기사, 장애학생지원부서의 종사자, 통학보조원 등 장애인의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원 인력 포함)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법 제13조 제6항)

넷째,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차별

- 순회학급, 파견학급, 병원학급 등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임의로 축소 적용하는 조치(법 제13조 제8항)

다.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이 법에서는 여섯 가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교육책임자의 적극적인 교육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첫째는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를 대여하고 수리하는 편의 제공 의무이다. 둘째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제공하는 의무이다. 셋째는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낮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등을 대여하고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편의 제공 의무이다. 넷

째는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확대문자자료, 화면낭독 등을 포함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이다. 다섯째는 교육 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할 의무이다. 여섯째는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 사항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의무이다. 또 교육책임자에게 이상의 여섯 가지 편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시행령의 규정을 포함하여 법에서 제시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 및 접근 편의제공

-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법 제14조 제1항 제1호)
-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제공(령 제8조 제2호)
-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제공(령 제8조 제3호)

둘째, 보조인력 배치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셋째, 학습 및 의사소통을 위한 보상기자재 제공

-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법 제14조 제1항 제3호)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넷째, 적절한 교육 및 평가

-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법 제14조 제1항 제5호)

-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의 제공(령 제8조 제1호)
- 다섯째, 장애학생 지원부서(또는 담당자)
- 법 제14조 제1항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지원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배치(법 제14조 제2항)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함(령 제10조 제1항)
 - 교육책임자는 당해교육기관의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령 제10조 제2항)

라.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교육 차별금지

한편, 이 법에서는 별도의 장을 두어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교육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성인식 및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폭력예방교육 내용에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되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3조 제3항), 장애아동에 대해 교육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조).

마. 교육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이상과 같은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 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 사안이 중대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의 행위가 차별로 간주될 경우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을 권고하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1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피진정인의 이의가 없을 경우 시정명령이 확정되며, 확정된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교육차별 현황

1. 장애인 교육 차별 현황

가. 장애인 교육 현황

국립특수교육원(2001)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요구아동(장애학생) 출현율은 2.71%로 만 6세~11세의 초등학교 학령 아동만을 놓고 보더라도 110,639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추정해 보면 약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교육받고 있는 장애학생은 유치원 과정까지를 합쳐도 71,484명에 그치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주로(67.3%)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중증·중복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은 3,837명이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의 교육차별 진정 동향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시행된 이래 2007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장애인 교육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보강조사, 정책권고, 판단불가 등을 포함하여 총 90건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이들을 차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표 2>와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에 의하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입학이나 전학거부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학습권 침해와 편의제공 부실이 전체의 84%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규정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1994년부터 전면 개정되어 최근까지 시행되어 온 특수교육진흥법의 영향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급학교가 임의로 장애인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규정에 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 학교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그 부모들은 특수학교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일반학교로의 통합을 선호함으로써 미처 편의시설이나 장애학생 지원

체제를 갖추지 못한 학교들이 학습권 침해와 편의제공 부실을 지적받게 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즉, 어느 정도 통합교육의 법적 조치들은 마련하였으나 실제 교육현장의 준비는 따르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표 3>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교육차별 사례 분류

(단위: 건, %)

유형	건(%)	주요 사례	비고
입학거부	2(2)	-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입소 거부	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함
전학강요	3(3)	- J초등학교 3학년에 전학하려하였으나 아동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 전학 명령을 받고 B초등학교로 전학함	
학습권 침해	42(47)	- 현장학습, 수련회 등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도우미를 부모가 책임지도록 강요함 - 적절한 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특수교육보조원 등 필요한 인적 서비스나 보조공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편의제공 부실	33(37)	- 교내 이동 접근 곤란 - 층마다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여 반드시 특정 화장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해야 함	
성인교육 부실	10(11)	-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음	
기 타	9(10)	- 입학유예 등 특별한 상황 신청을 할 경우 필요 이상의 서류(진단서 등)를 요구함 - 학교의 특별 행사 참여시 만약의 사태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함	
계	90(100)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의 교육차별 진정 동향

장애인의 성인교육 부실이 현실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지난 2004년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수정·보완 과정에서였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규교육 기회를 놓친 국민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 방송통신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중입·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실시하여 성인의 학력획득기회를 열어놓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민간에서도 ‘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어오기도 하였는데, 주로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볼런티어 성격이 컸다. 그러나 앞서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밝혀진 장애인의 성인교육 현황은 전국적으로 12개 기관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및 교양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설립주체는 개인, 민간단체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관으로 대부분 ‘장애인 야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기존의 야학과 다른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정이나 인력 충원 면에서 상황은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다. 정부에서는 국가가 제도 안의 교육전달체계도 아닌 볼런티어 성격이 강한 야학까지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논란 끝에 향후 장애성인 사회교육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야간학급 및 파견학급 설치·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수정·보완 계획,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간을 전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는 총 696건이며 이 중 교육 차별 시정에 관련된 진정 건수는 67건으로 9.0%를 차지하여 재할·용역(69.5%)에 이어 두 번째 많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이 기간에 조사 완료된 502건 가운데 교육은 53건이며, 그 가운데 28건이 권리구제 대상 사건으로 판단되어 전체 진정건수 중 52.8%의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이것은 전체 완료 건수 대비 권리구제 대상 비율 35.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권리구제 대상으로 인정된 진정 건수 중 합의 종결되거나 조사 중 각하 또는 기각으로 해결된 24건 외에 조사 완료 후 피진정인에게 차별 시정 권고를 한 것은 4건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피진정인의 권고 이행률은 60%에 머물러 전체 권고 이행률 85.3%, 공공부문 이행률 95.8%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자료(2009)에 따르면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내용은 <표 4>와 같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시험평가와 편의 제공에 관한 진정이 34.5%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제한이 27.6%, 수업 등 교내 활동 배제가 18.9%로 두드러진다. 그러나 전입학 거부(5.2%)나 기타(괴롭힘, 특수학급 설치 각각 6.9%) 진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진정사건의 유형과 비율

(단위: 건, %)

진정유형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시험평가 편의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기타 (괴롭힘)
공공부문	29	2	7	6	10	1	3
민간부문	29	1	9	14	1	3	1
합 계 (%)	58 (100)	3 (5.2)	16 (27.6)	20 (34.5)	11 (18.9)	4 (6.9)	4 (6.9)

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한 진정 유형의 비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장애인 교육차별 관련 진정 사건 통계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진정 사건의 수적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7년 동안 90건이었던 진정사례가 법 제정 이후인 2008년 한 해에만 58건으로 연평균 4.5배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장애인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 회복 욕구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두 번째 사실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유형별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입학 거부나 제한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전후하여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비율 또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표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의 진정 유형별 변화

(단위: %)

유형	법 시행 이전(90건)	법 시행 이후(58건)	비고
전입학 거부 제한	5.5(5건)	5.2(3건)	- 가장 낮은 진정률
시설물 접근 및 이용	36.6(33건)	27.6(16건)	- 교육 환경 개선으로 점차 진정률이 낮아짐
학습권 침해	46.6(42건)	53.4(31건)	- 법 시행으로 강한 요구 발생 - 당분간 진정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기타	21.1(19건)	13.8(8건)	

이것은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지정 배치권을 교육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의 거부권을 엄격히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의 경우 법 시행 전에 비해 법 시행 후 진정 건수가 9%나 줄었다. 이것은 학교의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개선을 꾸준히 진행해 오며 따라 점차 그 불편이 시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학습권 침해 부분에 대한 진정 건수는 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것이야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법 시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다양한 불편과 차별을 느끼면서도 차별적 대우의 경계를 가늠할 수 없었던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법 시행 이후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적시된 내용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받아온 차별을 분명히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권 침해에 관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진정률은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

앞에서 제시한 2007년과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교육차별 진정 사례들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불합리한 수업 지원과 평가’, ‘교내 이동과 접근 곤란’, ‘교육활동의 배제 및 부분적 허용’, 입학 거부 및 전학 강요’ 등의 순이었다. 이들을 각각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불합리한 수업 지원과 평가

수업이나 시험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주로 시각이나 청각장애로 보통의 문자를 읽을 수 없거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곤란을 갖고 있다. 또는 심한 운동기능 마비로 언어장애를 갖고 있거나 필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교육 차별이다. 필요시 장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 (수업 시작 전까지) 점자로 된 수업자료 제공

-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 제공
-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시각장애인용 정보단말기) 대여
- 확대된 수업 자료 제공
- 수업자료를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디지털 혹은 광학기기 제공
-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 문자통역 서비스 제공
- 강의록 대필 서비스 제공
- 대체 평가 방식 제공(포트폴리오, 시간 연장, 구술, 파일제출, 개별문답, 평가내용의 사전 제시 등)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팔걸이가 있는 의자
- 그 밖의 수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학습보상기자재

2) 교내 이동과 접근 곤란

교내 시설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완전한 이동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교육시설들이 법률적 규정(1996년)이 마련되기 이전에 지어져 통합교육, 특별전형제도 등으로 늘어난 장애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시설적 미비에 따른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기존시설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지점을 선정하여 보완적 장치들을 설치함으로써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장애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시급히 이동접근이 보장되어야 할 지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사(校舍, 개별건물) : 현관(주출입구), 복도(수평이동), 엘리베이터(수직이동)
- 교실(강의실) : 출입구(턱과 폭)
- 화장실 : 출입구, 지지대, 휠체어 회전 공간
- 교무실(학과사무실) : 출입구
- 도서실(도서관) : 출입구, 서가의 폭(혹은 도우미)
- 식당(학생회관) : 출입구
- 교정(운동장, 캠퍼스) : 교문 ↔ 현관(이동로-점자, 경사로 등)

3) 교육활동의 배제 또는 부분적 참여 허용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과 부모들이 가장 크게 차별을 겪으면서도 교육책임자나 교사 스스로도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수업이나 교육활동 기회에서의 배제 혹은 제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장애아라는 이유로 학교 시험이나 현장학습에서 배제되었다는 부모의 진정 내용도 있다. 그동안 장애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에서 자주 배제되거나 부분적인 참여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 수업 및 학급활동 참여(읽기, 앞에 나와 문제 풀기, 발표, 지명, 임원 등)
- 특별교실(과학실, 음악실, 가정실습실 등) 수업
- 체육수업
- 견학, 체험 등의 현장학습
- 수련회
- 수학여행 등

수업활동이나 학급활동, 특별교실 수업, 체육수업과 같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경우 교사들의 자각과 인식변화로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견학이나 수학여행 등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여전히 학교와 부모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는 부모에게 학생 보호를 요구하고,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결석을 유도한다.

4) 입학 및 전학 거부

장애학생의 입학 및 전학 거부는 1994년부터 법률로 금지함으로써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저마다 입학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학이나 유치원 이하의 과정에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지금도 종종 입학 거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 입학의 경우 장애학생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보다는 선발 절차의 공정성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학생을 배제하거나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면접이나 특별한 서류 등의 요구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유치원 이하의 경우 장애아동의 입학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시키지 않음으로써(유치원 이하의 기관이 대부분 사립이라는 한계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직접적인 거부 사례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사건 가운데, 다음과 같은 사례는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A예술중학교로부터 발달장애가 있으며 특수학급 출신이라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 및 입학을 거부당하였음. 이 문제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수차례 문제 제기 하자 교육청에서는 현재 피해자가 다니는 B중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여름방학전일까지 임시적으로 피해자를 A예술중학교에 다니도록 하되, 기간이 종료 되면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에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치를 취함.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학교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조사 중 해결)”

학생의 배경이 없어 알 수는 없지만, 이 학생이 예술중학교를 지원한 것은 분명히 어떤 분야(특정 악기의 연주와 같은)에 두각을 보여서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일단 한 학기 동안 A학교에 다니도록 한 교육청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 것은 진행 과정에 진정인과 학교, 교육청 사이의 불협화음이 길었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A예술중학교가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로서 학생들의 입학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면 학교 측 입장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확대해 보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제 중·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 나아가 대학들이 설립 이념과 목적에 따라 저마다 학생들의 선발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건을 들어 학교가 특정 장애인의 입학을 불허할 경우 신중한 차별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학교가 장애를 이유로 학생의 입학을 불허한다면 명백한 차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장애유무를 떠나 본교에서 정한 학생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입학을 불허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무조건 차별로 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장애인도 입학요건에서 예외적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 분야나 특정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장애아동의 잠재능력을 일찍부터 충분히 관찰하고, 직전학교의 장이나 관련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차별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바. 장애인에 대한 교육차별 사례

1) 사례1: 전학 강요(법률 제13조 제1항 관련)

내가 아는 한 엄마는 발달장애 여자 아이를 두고 있다. 그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늘 긴장 속에서 지낸다. 담임교사는 영어선생님이시고, 특수학급 선생님은 남자이시다. 일반학급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부조화가 생겼다.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특정한 것에 집착하고, 옷맵시를 가지런히 하지 못해 다른 아이들로부터 놀림 당할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1학기 중에 이미 특수학교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며 학교생활 중에 부족한 점을 부각시켜 말씀하셨단다. 아이가 수업 중에 바닥에 한참 엎드렸다 일어났는데, 바닥에 침이 묻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소리 지르고 소동이 있었다. 선생님이 조금만 아이들을 언어로 제지하고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다가가면 그런 행동들이 잡힐 것 같은데, 교실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고 장애아라고 따돌리고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잇을 만 했더니,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 다시 아이의 부적응 문제를 이야기하시며, 일반학교에서 이 아이에게 도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특수학교로 가라고 했단다.(※ 자료출처 : 미간행물, 2005. 11. 8. 어느 학부모 C씨의 일기 중에서)

2) 사례2: 입학 지원에서의 차별(법률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3호 관련)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 허○○씨가 수험장의 장애인용 시설 미비에 항의하며 중도 퇴장했다. 허씨는 이날 지역 장애수험생들의 고사장인 경북대 사대부고에서 2교시 시험을 마친 뒤 중도 퇴장했다. 허씨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책상이 설치되지 않은 불평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다”면서 “대학 진학을 1년 연기하더라도 후배 장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징적인 항의의 표시로 시험을 중도 포기했다”고 주위에 밝혔다.(※ 자료출처 : 한겨

레신문. 2003. 11. 5.)

3) 사례3: 교내외 교육활동에서의 배제(법률 제13조 제4항 관련)

다른 초등학교 4학년 민식이 어머니께서 올해가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한숨을 쉬신다. 원반 선생님을 잘 못 만났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현장학습 때도 민식이를 못 데려간다고 했고, 수련회를 가는데 못 데려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민식이는 문제행동도 하지 않고, 단지 반복해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한다. 언어도 가능하고, 몸도 건강하고, 혼자서 이탈 행동도 하지 않는데도 힘들다고 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찬희는 봄에 다녀왔다. 도움반 선생님께서 같이 가 주셨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문제행동도 하지 않고 2박 3일 동안 잘 다녀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아프다.(※ 자료출처 : 미간행물. 2005. 10. 13. 어느 학부모 A씨의 일기 중에서. 내용 중 인명은 모두 가명임)

4) 사례4: 장애학생에 대한 모욕과 비하(법률 제13조 제6항 관련)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선생님이 통합체육에 관한 논문을 쓰기 위해 반 아이들과 인터뷰한 내용에 한 반 아이가 겉으로는 우리 아이를 잘 챙겨주는 척하면서 약 6개월 동안 계속 다리를 발로 차고 못살게 굴었던 내용을 말한 적이 있다. 반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선생님과 인터뷰가 있기 전까지 특수교사나 부모에게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중에 특수학급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당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자식이라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방어력이 전혀 없는 아이에게 그제 맞는 말인지(※ 자료출처 : 미간행물. 2005. 10. 12. 어느 학부모 B씨의 일기 중에서)

5) 사례5: 장애인에 대한 무시(법률 제13조 제6항 및 시행령 제8조 1호 관련)

“수업 시작할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 했더니, 교수님께서 ‘넌 다음부터 수업 들어오지 않아도 돼. 학점은 내가 알아서 줄게.’라고 하시더군요. 따져야 되는데, 눈물부터 나서 다른 과목 교수님은 장애인들에 대해 출석도 안 불렀죠.”(※ 자료출처 : 조선일보. 2003. 2. 5.)

6) 사례6: 입학 지원 과정에서의 차별(법률 제13조 제7항 관련)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어느 국립대학의 전형요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필한 자/중복장애는 제외/본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교육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업이 가능한 지를 확인 후 신중히 지원하여야 함
- 본 대학교는 현재까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교육시설이 없으니 해당 지원자는 유념하기 바라며 신체장애가 있는 지원자는 사전에 본 대학교에 설치된 ‘신체장애자 입학상담실’에 상담하여야 한다.
- 신체장애자 입학허가 판단기준<신체장애 정도 적용>(각 1, 2는 입학허가, 3, 4, 5는 심의기구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 : 실험, 실습, 학습 환경의 위험도 등 학과의 특성을 고려)
 1. 제3자의 도움이 없이도 학습이 가능
 2. 학습동료 등 제3자의 부분적인 도움으로 학습이 가능
 3. 제3자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수업의 이행 및 수업의 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수학이 불가능한 자
 4. 농 · 맹아자
 5. 기타

이처럼 대학들이 특별전형으로 장애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 요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각 대학별로 선발기준을 정하고 있다.
- 장애인 심사위원회 등의 한시적 위원회를 구성한다.
- 검증된 객관적 기준이 아닌 대학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은 상담실에서 사전면접을 거쳐야 한다.
- 사전면접을 통해 학교에 아무런 교육시설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

서나 합의서를 요구한다.

- 제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교육권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2004. 12. 16.). 9쪽.)

7) 사례7: 편의제공에 대한 차별(법률 제14조 제1항 4호 관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통대’)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수업 시 이들의 강의내용 접근을 위해 필요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2006년 기준 방통대의 재학생 중 38명이 청각장애학생으로, 방통대는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통한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동 제도의 내용은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길 안내 및 휠체어 밀어주기, 출석 수업,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체시험 때 시험대필 및 대독 등이 대부분이며,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수업 시 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내용은 없다.(※ 자료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07).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집[차별시정분야]. 336-342쪽. 발췌 정리)

8) 사례8: 이동 및 접근에서의 불이익(시행령 제8조 3호 관련)

“지금 종합관이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한 애들도 거기를 힘들게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종합관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교양 수업을 그 건물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이 1층하고 3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이 2층에 걸리면 그 과목은 안 듣거나 따로 말해서 강의실을 1층으로 내리거나 해요.”(※ 자료출처 : 위드뉴스. 2003. 2. 6.)

IV.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교육적 조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다. 또 법 이행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은 이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장애인인권포럼에서는 전국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권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국가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와 큰 격차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시급히 수행해야 할 국가정책들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즉시 시행되는 사항들에 따른 변화도 있을 것이고 단계적 시행사항에 따른 변화들도 있을 것이다.

가. 즉시 시행되는 사항들에 따른 변화

당장 2008년 4월 11일 법 시행과 함께 모든 교육기관에서 예·체능 과목 등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교육책임자를 비롯하여 교직원들은 재학 중인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특수교육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에서는 장애인이 입학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에게는 받지 않는 특정 서류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양식에 원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하는 편의제공을 하지 않거나, 순회교육 시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이상과 같은 사항들은 비교적 장애인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들이다.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 또는 거부하는 행위도 그동안 특수학교가 아닌 초·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교육차별사례였다. 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보조를 요구함으로써 생계활동에 곤란을 주거나, 학교방문에 따른 부담을 주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현장견학이나 수학여행과 같은 특별활동이 있을 때 직간접적으로 결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요구는 법률 위반 사유가 될 수 있다.

취업이나 진로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일반학교가 취약하다. 그것은 구조적인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소수의 장애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 욕구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과 차별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장이 처해 있는 상황이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이 문제는 장애인의 요구에 맞도록 설계되지 않은 기존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풀어가기 어렵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직업학교 시스템(전국적으로 7개교가 운영되고 있음)을 응용하여 활용하는 등의 발 빠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내에서 장애학생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학생들 사이에서, 또는 일반학부모들의 과도한 염려와 개입으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은 주변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으로 고통 받은 경험들을 갖고 있어 피해의식이 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윤리적으로도 성숙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책임자와 교직원들은 개인적 견해에 의존하기보다는 충분한 상황파악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중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전문적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그 학생의 입학이나 전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학 지원 시에도 다른 학생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특별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면접이나 시험 등을 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보다는 대학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로, 그동안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때문에 쉽게 해소되지 않아 왔다. 그동안 대학을 상대로 한 당사자의 제소와 재판으로 수차례에

결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특수교육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입학전형 시 이 같은 차별을 금지하도록 강력히 명시해 두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입학전형위원회나 장애학생지원부서의 적극적 업무 관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하는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란 시행령 제9조 별표 2에 교육기관별로 정해진 단계적 적용기간에 아직 해당되지 않을 경우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4월 10일까지는 국·공립 유치원은 법 제14조 제1항과 시행령 제8조의 편의제공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면에, 순회교육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 그 기준은 다시 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교육 참여와 관련한 장애의 중증 여부가 관건이 아닐까 한다. ‘특수교육법’의 정의(제2조)에 의하면 순회교육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 학생들은 장애가 중증이거나 치료 중에 있어서 교육과정에서 정한 시수를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단계적 시행 사항들에 따른 변화

그러나 국·공·사립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치원과 각급학교,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 등의 교육기관에서는 2009년 4월 11일부터, 그 외의 교육기관에서는 2011년과 2013년 4월 11일부터 각각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반드시 법 제14조 제1항과 시행령 제8조의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교육기관은 사전에 <표 6>과 같은 편의제공 유형과 수단을 갖추었거나 시행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표 6>의 장애인 교육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교육기관에서는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하거나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가운데서 규모가 크거나 재학하고 있는 장애인이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학교는 대학별로 학과도 다양하고 학생 수도 많아 여러 학교들의

집합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원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도시의 대규모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도 장애학생들이 많을 경우 별도의 지원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사실상 장애학생 지원부서의 역할과 매우 유사하므로 해당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비롯한 특수교육 보조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부서를 설치하기보다 특수학급에 지원부서의 역할을 겸하도록 하거나 담당자를 정하여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적 관계를 갖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관할 교육청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표 6> 장애인 교육 편의 제공 유형과 수단

유형	수단	제공 체계
통학관련 교통편의	- 특장차	- 직접 구입 운행 - 장애인 콜택시 이용
	- 교통비 지원	- 통학 도우미
	- 보조인력	- 학교버스 보조인력 지원
학교 내 이동·접근 편의 시설·설비	- 자동문, 경사로, 승강기, 지지대 등	- 편의증진법 제2조 제2호 의무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우선 적용
학습용 보상기자재	- 확대 독서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텍스트 음성 변환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 직접 구입 대여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보완대체의 사소통기기	- 의사소통판, 알파토커 등	- 직접 제작 또는 구입 대여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대체 의사소통	- 수화통역, 문자통역, 점자자료 등	- 전문 인력 임용 - 지역사회 수화통역센터 등 협력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보장구	- 휠체어, 클리치, 워커 등	- 직접 구입 대여 - 지역사회 보조공학 센터 협력
보조인력 서비스	- 특수교육보조원 등의 지원 인력	- 교육청, 자활후견기관협회, 병무청 등과 협력

‘유아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한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별도의 부서는 아니더라도 담당자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지원부서의 설치나 담당자의 배치 시기는 별 다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시행령 제9조 별표 2의 단계적 시기를 따르면 될 것이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적 조치들

가. 장애인 교육차별 금지 홍보

본 법률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정확한 인식이다. 따라서 법에 담겨 있는 교육관련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를 널리 홍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장기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교육이 담당해야 할 책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보다 확대해서 접근하자면, 홍보는 비단 교육에만 국한시킬 일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반의 목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장애인의 감수성을 갖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감수성이란 제삼자의 개입이나 설명 없이 상대방을 직접 이해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장애인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친구, 애인, 동업자, 이웃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예방적 차원’으로 볼 수 있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것’은 ‘회복, 또는 보상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 가운데 전자에 먼저 중점을 두어 보면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 법의 시행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해 차별을 범하는 국민을 벌하기 이전에, 그들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차별행위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차별을 범하지 않도록 계도

하며, 장애인이 차별을 받았을 때 겪게 되는 고통을 깨닫게 함으로써 차별이 없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목적은 바로 홍보라고 하는 정책적 방안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홍보는 그 성격상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매우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적절한 정책 방안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교육과정에 관련 단원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학교 급별로 국어, 도덕, 사회, 종교, 철학 등 인성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교과에 장애인 관련 단원이나 학습내용을 포함하거나, 기존 단원과 연계시켜 장애인 관련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미래형 교육과정’으로도 불리고 있는 제8차 교육과정의 준비가 한창인 지금 이 부분에 관심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또 통합교육의 확대에 따른 학교관리자와 교사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책임자나 교사들이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전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이다. 교육기관에 의한 홍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기구나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홍보활동은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계층에 인식 전환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준수 정책

또 하나 중요한 교육적 조치는 지금까지의 차별사례를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포함된 정책제시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교육과 관련해서 받아온 차별도 그 실태를 파악해보면 몇 가지 유형이 발견될 것이고 각각의 유형을 분석해 보면 원인들도 나타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이미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개인이나 단체 수준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 결과들을 토대로 국가나 지역 단위에서 수행할 필요가 남아 있다.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교육차별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1) 교육기관 편의시설 설치 최소기준 마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별표1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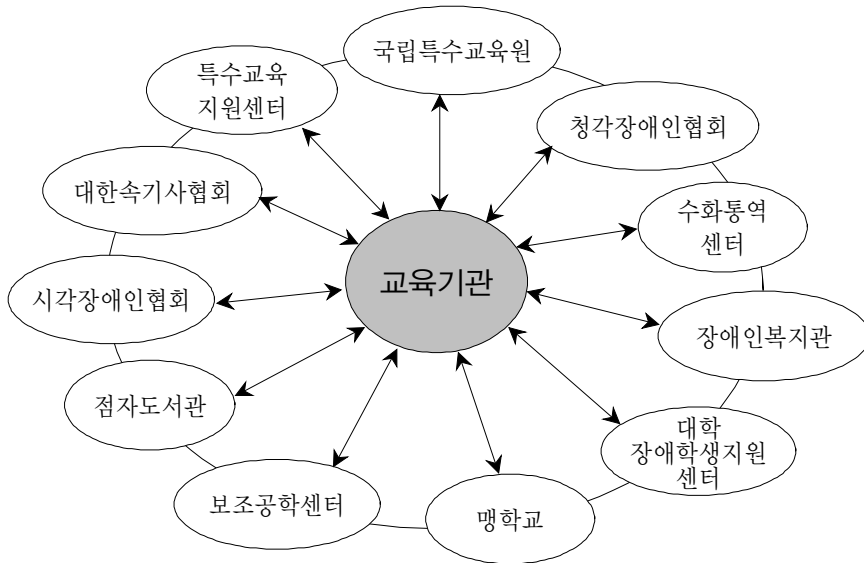
편의시설 설치대상 기관으로 정한 교육연구시설과 노유자 시설 속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14조 제1항 1호와 3호의 내용은 편의시설 설치와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다소 혼재된 채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법 제정 과정에서 조문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까닭이다. 따라서 제1호의 취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제3호는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 의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해야 할 것이다. 즉, 제1호에 제시된 준수사항은 이동 및 접근 보장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에 있다기보다 이동 및 접근 편의 제공 그 자체 있다고 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3호의 규정은 비교적 장애인 개인의 요구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반면, 제1호의 규정은 어느 교육기관이냐를 막론하고 설치해야 하는 것들로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6호의 교육기관과 시행령 제4조의 교육기관을 실사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성격에 맞는 몇 가지 최소 표준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교육 보조 인력 양성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보조 인력으로는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과 제5항에 ‘보조인력’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은 구분 없이 ‘특수교육보조원’으로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학생 보호, 교내활동 통제, 통학보조 등 낮은 수준의 업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4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 외에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역, 음성전환문서편집(시각장애인들이 묵자를 음성으로 전환하여 들을 수 있도록 기존의 문서를 편집), 보조공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다양한 보조 인력의 확보와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수화통역사는 청각장애인협회에서, 속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점역사는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각각 배출하고 있으나, 이들을 곧바로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직전교육이나 재교육을 통해 교육기관 근무 소양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전체 혹은 지역 내 교육 보조 인력의 예상 소요 인력과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인력 수급에 대한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관에 따라서는 교육 보조 인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 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조 인력의 제공은 [그림 1]과 같이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그림 1] 교육보조인력 제공을 위한 교육기관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시각장애)

3) 보조공학 서비스 체계 정비 및 확충

법 제14조 제1항 4호에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각종 보상기자재 및 이동 접근 용 기자재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 기기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이동이나 접근,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기들은 개인에 따라 이미 구비하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동안 최초로 구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에 필요한 학습 보상용 기자재의 경우는 학습 장면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므로 학생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구비하여 제공해야 할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기자재들을 모든 교육기관에서 사전에 구비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대단한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수학교나

장애인이 다수인 특정 교육기관을 제외하고는 보조공학 기자재의 비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림 1]에서와 같이 지역사회 ‘보조공학센터’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특정 보상기자재를 대여하거나 구비를 알선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보조공학 가운데서도 교육관련 보조공학 기자재들만을 특화시킨 ‘교육 보조공학 지원센터’ 등을 권역별로 설치하여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V. 전망과 맺음

1.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진통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장애인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모든 분야가 그렇겠지만, 특히 교육 분야는 기회의 측면과 내용의 측면, 즉 양질의 측면에서 공히 한 개인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야이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이러한 기대와 열의에도 불구하고 당장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교육기관과 교육책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하면, 아무리 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미처 준비되지 않은 교육기관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지금까지 교육의 평등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체감해온 장애인계에서는 그간의 차별구조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법적 진정이나 소송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주요 대상은 아무래도 특수학교보다는 여러 모로 기반이 취약한 일반학교일 가능성이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청의 준비라 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민원에 대해 학교 차원의 해결책이 없을 경우 대부분 교육청에 호소해 보지만, 교육청은 ‘학교장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으로만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매우 무책임한 대응이다.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유형들을 수집 분석하고 이에 대한

예방지침과 해결방안을 개발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보급해야 하며, 교사교육이나 학교 관리자교육에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며, 한시적으로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단위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해결하는 기구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새로운 약속

법률은 국민이 서로 의견을 내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정하여 그렇게 하자고, 또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다. 약속은 어긴 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그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법률을 통해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여성, 아동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음으로 양으로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해 온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동안 수많은 법률로 정해온 약속들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국민과도 반드시 지키자고 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다. 특별히 장애인을 국민의 중심에 놓고 하는 첫 약속이라 다소 무리가 있고, 중언부언한 부분도 있다. 장애인의 인권과 삶을 고민해온 전문가들이라면, 이 법이 얼마나 허점이 많고 아마추어적인지 금방 눈에 거슬릴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규정을 특수한 상황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중복규정이 많이 발견된다. 이것은 법률 제정과정에서 각자가 고용, 교육, 여성 하는 식으로 분과(또는 소위원회)로 나누어 고민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제시된 규정들을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하고 다스리는 작업이 있었겠지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사람이 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약속 때문에 상처받아온 사람들의 봇물 같은 요구를 들어 만들었기 때문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당사자’, ‘장애인의 감수성’을 너무 앞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약속만큼은 지켰으면 한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매우 인간적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장애인들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
- 교육과학기술부(2008).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수정·보완 계획.
- 국가인권위원회(2007). 장애인 차별사례 요약자료. 비 간행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09).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유형별 사례(2008. 4. 1.~2008. 12. 31.).
- 국립특수교육원(2001).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을 조사연구.
- 김주영(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교육부분 평가 및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해설서.
- 윤점룡, 원성욱, 이상진, 김주영(2003).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

도 경 만

(충남당진송산초교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¹⁾

도 경 만 (충남당진송산초교 특수학급 교사)

- 안민석·이상민의원실 및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 추진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여건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1. 법률 시행에 따른 변화된 교육 환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지난 2007년 5월 25일 제정되어, 2008년 5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지난 30여년간 특수교육 현장에 적용되어 왔던 ‘특수교육진흥법’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마련된 법률로써, 향후 장애인 교육 현장의 일대 혁신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이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지원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영아, 장애유아, 장애인대학생,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지원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법률에 근거해 교육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많은 장애인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1) 이 원고의 조사결과 자료는 국회 안민석 의원(민주당) 및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그리고 한국장애인 재단의 지원으로 취합 및 분석된 자료입니다.

나. 교육지원 대상의 범위 확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범위 변동 현황>

기존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고
지체부자유	→	지체장애	지체부자유를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칭대로 지체장애로 변경
시각장애	→	시각장애	존치
청각장애	→	청각장애	존치
언어장애	→	의사소통장애	확대 변경 기존의 구어장애와 실제의 언어장애를 포함
정신지체	→	정신지체	존치
정서장애 (정신장애)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확대 변경 자폐의 경우는 그 특성 및 교육요구를 고려하여 별도로 분류. 정서장애 유형에 행동장애도 포함.
건강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등)	→	건강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대상 확대 필요
학습장애	→	학습장애	존치
-	→	발달지체	신설
기타		기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대상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다. 기존의 경우 8개 장애유형에 해당되고 특수교육적 요구가 있어야만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었는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8개 장애유형 이외에도 발달지체가 신설되어 장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아동에게도 교육지원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정서장애를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로 각각 독립하여, 각 장애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언어장애 역시 의사소통장애라는 개념으로 확대 정의하여, 의사소통 전반에 걸쳐 장애를 갖고 있

는 학생들도 특수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대학생과 장애성인도 교육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생애주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교육 기회 확대

교육지원 대상을 넓힌 것 이외에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규정들을 대폭 보완했다. 지역별/학교급별로 불균형적으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이하 ‘특수교육기관’)가 설치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별/학교급별로 균형있게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수학교 내에 영아반을 설치하고, 장애영유아에게 순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공과의 교육내용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정신지체/최중도 장애학생들도 고교 졸업 후, 학교에서 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직업전교육(또는 자립생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영아기 및 전공과 교육과정의 경우 무상교육임을 법률에 명시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와 함께 만 0세 - 만 18세(또는 19세)까지의 무상의 공교육적 지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무상·의무교육 연한 확대 현황(법률 제3조)>

구분	기존	장애인교육법	비고
영아기 과정 (만0세-만2세)	없음	무상	변경
유치원 과정 (만3세-학령전)	무상	의무	변경
초, 중학교 과정 (만7세-만14세)	의무	의무	동일
고등학교 과정 (만15세-만17세)	무상	의무	변경
전공과 과정 (만18세이상)	없음	무상	변경

라. 교육의 질 제고

이와 같은 교육기회 확대 관련 규정 이외에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학급 설치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써 명시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기존과 비교해 두 배이상 가까이 감축하도록 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해, 현장의 특수교육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지원 및 통합학급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 변경 현황>

구분		기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비고
법적 근거		법 제15조 제3항 및 법에 근거한 시행령 제13조의 2 제1항	제27조 제1항	법률로써 명시
기준 적용 대상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의 학급	특수학교까지 확대
설치 기준	유치원 과정	1인 이상 12인 이하 - 1학급 12인 초과 - 2학급 이상 (각 과정 공통)	1인 이상 4인 이하 - 1학급 4인 초과 - 2학급 이상	8인 감축
	초등학교 과정		1인 이상 6인 이하 - 1학급 6인 초과 - 2학급 이상	6인 감축
	중학교 과정		1인 이상 6인 이하 - 1학급 6인 초과 - 2학급 이상	6인 감축
	고등학교 과정		1인 이상 7인 이하 - 1학급 7인 초과 - 2학급 이상	5인 감축

뿐만 아니라, 관련서비스 규정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관련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가족 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통학지원, 정보접근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련서비스 규정 신설을 통하여,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치료지원 및 보조인력 지원, 통학지원 등은 이미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라, 이 법률 제정으로, 그러한 요구

를 일정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정 이외에도, 개별화교육 관련 조항을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하였다. 부모, 특수교사, 일반교사, 관련서비스 담당인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장애학생 개인에 대한 장, 단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개별화교육이 각급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요구에 적합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한편, 통합교육을 재정의하여,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쳤던 기존의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을 교수-학습적 통합(교육과정적 통합)까지 포함시켜 보다 실질적인 통합의 기회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교육의 개념을 기반으로 각급학교의 장은 매년 보조인력에 대한 지원, 교육과정의 조정, 교원의 연수 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도 포함시켰다.

마. 차별 금지 조항 강화

차별 금지 조항도 대폭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의 경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의 선언적 조항으로 반영된 것에 반해, 장애인교육법에서는 구체적인 차별 행위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우선 현장학습 및 수련회 등 학교 외부 활동에서의 참여 배제, 수업 참여 등 학교 내부 활동에서의 참여 배제,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참여 배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차별 배제 등을 구체적 차별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 장애인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의 배제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 차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의 대상(법률 제4조)>

바. 장애인대학생 및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지원 대책 중 장애인 대학생과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지원 규정도 새롭게 추가하였다. 장애인대학생에 대한 취학편의 및 수학편의를 위하여 대학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였다. 따라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는 이제 대학의 장의 선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교육복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학령기를 놓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에게도 교육기회의 문을 열어 주었다. 학교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교육연한 조정 및 또래성인들과의 교육이 어려워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성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장애성인을 위한 학교교육 이외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에도 다양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 지역의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정보센터 등이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장애성인들에게도 보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2. 법률 시행 이후 특수교육 여건 현황

가.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여건 평가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 추진 노력, 행·재정 역량, 주요 성과지표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집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지방교육의 행·재정적 집행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특수교육여건이 지방교육행정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항목의 경우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역간 특수교육 여건의 불균형 정도를 측정하여, 보다 균형적인 특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국가 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평가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함께 지방 교육에 대한 자원의 배분과 통제기준의 설정 등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사 내용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추진하고 있는 특수교육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첫 번째 조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 관련 기본 인프라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수교육 관련 기본 인프라는 ▲특수교육 예산, ▲특수교육 행정 지원 인력,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특수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타 행·재정적 집행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내용에는 ▲무상·의무교육 추진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개별화교육·통합교육·순회교육·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현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 등 법률의 각 조

항에 따른 세부적인 특수교육 사업과 관련된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주제발표 글에서는 이와 같이 조사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2개 분야, 18개 영역, 70개 지표를 통해 확인된 시·도별 특수교육 환경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조사 방법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국회 안민석 의원실, 이상민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의뢰하여 70개 지표에 대한 자료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하고, 취합한 자료를 지표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이었다.

나. 조사 결과

1) 시·도간 특수교육 인프라 현황

법률 시행 이후 시·도간 특수교육 인프라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특수교육 여건에서의 격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참고) 아래는 특수교육 인프라와 관련된 35개의 지표 중 격차 발생이 심각하게 보이는 지표 중 16개의 지표에 따른 시·도간 격차 현황 표이다.

분야	산출방법	가장 높은 시도	가장 낮은 시도	격차	전국 평균
특수교육예산의 비율	$(\text{특수교육예산} / \text{시도교육청 총예산}) \times 100$	대전 (5.8%)	강원 (3.1%)	2.7%	3.9%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특수교육 예산 /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전 (28,706천원)	서울 (16,500천원)	12,206 천원	21,786 천원
특수교육 전문직 중 특수교육 전공자의 비율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수 / 특수교육 전문직 수	울산 (100%)	전북 (18.8%)	81.2%	44.8%
특수교육 전문직 1인당 특수교사 수	전체 특수교사 수 / 특수교육 전문직 수	경북 (22.8명)	서울 (165.5명)	142.7명	53.8명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	$(\text{편의시설 설치 일반학교 수} / \text{편의시설 미설치 일반학교 수}) \times 100$	광주 (94.3%)	경북 (59.5%)	34.8%	79.5%
기존 특수학급의 연간 운영비	학교급별 특수학급 연간 운영비 평균	충남 (51,309천원)	경기 (22,095천원)	19,214 천원	34,868 천원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text{특수학급 설치 초등학교 수} / \text{일반 초등학교 수}) \times 100$	부산 (91.2%)	제주 (37.7%)	53.5%	57.9%
일반 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text{특수학급 설치 중학교 수} / \text{일반 중학교 수}) \times 100$	인천 (55.6%)	전북 (18.6%)	37.0%	38.3%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	$(\text{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 수} / \text{일반 고등학교 수}) \times 100$	인천 (51.4%)	전북 (11.5%)	39.9%	24.3%
유치원 특수학급 미설치 시·군·구의 비율	$(\text{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시군구 수} / \text{전체 시군구 수}) \times 100$	대전 (0%)	경북 (91.3%)	91.3%	49.4%
특수학교 고등부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text{특수학교 고등부 배치} \text{ 특수교육대상자 수} / \text{특수학교} \text{ 고등부의 총 학급 수}) \times 100$	제주 (5.4명)	전남 (10.2명)	4.8명	7.8명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text{일반 고등학교 배치} \text{ 특수교육대상자 수} / \text{일반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수}) \times 100$	강원 (4.8명)	대전 (10.3명)	5.5명	8.1명
특수교사의 비정규직 비율	$(\text{비정규 특수교사 수} / \text{전체 특수교사 수}) \times 100$	제주 (0%)	경기 (38.0%)	38.0%	12.5%
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비율	$(\text{연 2회 이상 장애이해 교육 실시} \text{ 일반학교 수} / \text{전체 일반학교 수}) \times 100$	제주 (39.9%)	광주, 전남, 경북 (100%)	60.1%	70.2%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 및 진학 비율	$(\text{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중 진학} \text{ 또는 취업한 학생 수} / \text{특수학교} \text{ 고등부 졸업생 수}) \times 100$	울산 (93.0%)	경기 (58.6%)	34.4%	74.9%
방과후 교육지원 대상자 비율	$(\text{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제공} \text{ 특수교육대상자 수} / \text{전체} \text{ 특수교육대상자 수}) \times 100$	충남 (75.4%)	울산 (3.2%)	72.2%	61.1%

표에는 해당 지표값이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만을 제시하였고, 가장 높은 시·도와 가장 낮은 시·도의 지표에 따른 산출값의 차이를 표시하고 있으며, 맨 오른쪽에는 전국 평균 지표 산출값이 제시되어 있다. 16개 지표 중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대비 5.8%의 예산을 특수교육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음에 반해,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3.1%의 예산을 특수교육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격차가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예산 비율이 3.9%인 것을 감안한다면 강원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예산 투입 수준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 전문직 배치 현황의 경우 서울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직 1인이 평균 165.5명의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음에 반해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 전문직 1인이 평균 22.8명의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 전문직 배치의 지역간 불균형 현상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의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 중 특수학급을 설치한 고등학교가 전국 평균 38.3%를 훨씬 웃도는 51.4%에 달함에 반해,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11.5%로 나타나 전국 평균에 훨씬 밑도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심각한 격차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학급 설치율의 격차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상급기관으로의 진학 기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학교 고등부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의 경우, 제주도교육청 관할 특수학교는 1개 학급 평균 5.4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에 반해, 전라남도교육청 관할 특수학교는 1개 학급 평균 10.2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라남도내 특수학교의 학급 과밀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평균 7.8명)

특수교사의 비정규직 비율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특수교사의 38.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 12.5%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고, 제주도교육청의 0%와 비교해 볼 때 더욱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 설치율, 장애이해교육실시율, 방과후 교육지원 대상자의 비율 등 특수교육 인프라와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지역간 심각한 격차가 확인되어, 향후 이를 균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행정의 지방분권화 이후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극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 절대적 수준에 이르지 못

한 특수교육 분야의 경우, 다른 일반 교육 정책과는 달리 중앙정부로의 행·재정적 집행 권한 환원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시·도별 법률 이행 현황

가)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이행 현황

① 근거

〈법〉 제3조 (의무교육 등)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무상교육 비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음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장애유아 수 대비 유치원 특수교육 수혜율

구분	등록 장애유아 수 (만 3세 ~ 5세)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유아 수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서울	1,223	586	47.9%
부산	445	382	85.8%
대구	345	148	42.9%
인천	400	83	20.8%
광주	185	23	12.4%
대전	269	160	59.9%
울산	144	60	41.7%
경기	1,783	320	17.9%
강원	196	41	20.9%
충북	207	83	40.1%
충남	270	72	26.7%
전북	250	54	21.6%
전남	221	79	35.7%
경북	322	94	29.2%
경남	484	54	11.2%
제주	106	12	11.3%
합계	6,850	2,251	32.9%

조사 결과 등록 장애유아 6,850명 중 2,251명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32.9%의 장애유아가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7.1%의 장애유아는 공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유아의 공적인 특수교육 지원 및 유치원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 수혜율 향상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향후 5년간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계획

구분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유치원 수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서울	828	1	0.1%
부산	366	4	1.1%
대구	300	4	1.3%
인천	360	50	13.9%
광주	229	5	2.2%
대전	221	15	6.8%
울산	177	11	6.2%
경기	934	0	0%
강원	397	10	2.5%
충북	319	6	1.9%
충남	510	15	2.9%
전북	1181	4	0.3%
전남	567	0	0%
경북	681	1	0.2%
경남	679	47	6.9%
제주	109	0	0%
합계	7,858	173	2.2%

현재 전국에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유치원이 7,858개교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향후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조사한 결과 173개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미설치 유치원 수 중 2.2%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특수학급이 설치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5년간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는 초등학교(57.9%), 중학교(38.3%), 고등학교(24.3%)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저조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 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각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학급 신설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 5년간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계획

구분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수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 고등학교 수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수 대비 신설 계획 비율
서울	255	20	7.8
부산	100	27	27
대구	64	18	28.1
인천	52	19	36.5
광주	45	7	15.6
대전	35	25	71.4
울산	32	19	59.4
경기	278	30	10.8
강원	90	10	11.1
충북	52	9	17.3
충남	42	40	95.2
전북	115	21	18.3
전남	119	7	5.9
경북	162	11	6.8
경남	133	20	15.0
제주	25	3	12
합계	1,599	286	17.9%

현재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24.3%로 일반 초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33.6%, 중학교와는 14.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상급학교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교육 과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향후 이와 같은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수월해지기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향후 5년간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설 계획을 조사한 결과, 특수학급 미설치 고등학교 1,599개교 중 286개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면 5년 이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42.2%까지 확대되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교 선택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도별 설치 계획을 살펴보면, 서울, 전남, 경북은 다른 시·도에 비하여 고등

학교 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확대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충남의 경우 42개 미설치교 중 40개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시·도에 비해 고등학교 의무교육 이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이행 현황

① 근거

〈법〉 제3조 (의무교육 등)

-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

〈법〉 제18조 (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
-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
-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함
-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장애영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구분	등록 장애영아 수 (만 0세 ~ 2세)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의 특수교육 수혜율
서울	315	32	10.2%
부산	135	27	20.0%
대구	95	5	5.3%
인천	122	109	89.3%
광주	69	2	2.9%
대전	68	0	0%
울산	40	6	15.0%
경기	483	50	10.4%
강원	48	4	8.3%
충북	55	22	40.0%
충남	74	17	22.9%
전북	62	0	0.0%
전남	73	1	1.4%
경북	82	19	23.2%
경남	150	0	0%
제주	34	12	35.3%
합계	1,905	306	16.1%

장애영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을 조사한 결과 등록 장애영아 1,905명 중 306명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의 16.1%) 이와 같은 수치는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수혜율 32.9%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장애영아를 둔 보호자의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이 저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장애영아의 학급 수요량 대비 향후 5년간 영아학급 설치 비율

구분	등록 장애영아 수 (만 0세 ~ 2세) (A)	특수교육을 제공받고 있는 (특수교육기관 에 배치된) 장애영아 수 (B)	특수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영아 수 (A-B)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 수요량 (A-B)/4	향후 5년간 영아학급 증설(공급) 계획 (C)	수요 대비 공급 비율 [C/{(A-B)/4}] × 100
서울	315	32	283	71	86	121.6%
부산	135	27	108	27	10	37.0%
대구	95	5	90	23	12	53.3%
인천	122	109	13	3	36	1107.7%
광주	69	2	67	17	2	11.9%
대전	68	0	68	17	9	52.9%
울산	40	6	34	9	2	23.5%
경기	483	50	433	108	10	9.2%
강원	48	4	44	11	7	63.6%
충북	55	22	33	8	9	109.1%
충남	74	17	57	14	12	84.2%
전북	62	0	62	16	5	32.3%
전남	73	1	72	18	2	11.1%
경북	82	19	63	16	8	50.8%
경남	150	0	150	38	29	77.3%
제주	34	12	22	6	2	33.3%
합계	1,905	306	1,599	402	241	60.0%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각 시·도가 계획하고 있는 영아학급 설치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영아학급 수요 대비 60% 정도를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모든 장애영아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수요를 조사한 이후, 수요에 따른 학급 신설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 수요 조사 여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별 수요 조사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광주, 경기, 경북 지역의 경우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계획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장애영아의 학급 수요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의 연수 운영 현황

① 근거

〈법〉 제8조 (교원의 자질향상)

-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
-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 미이수 비율

구분	통합학급 담당교사 수	연수 미이수 교사 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미이수율
서울	6,513	2,054	31.5
부산	3,283	1,499	45.7
대구	2,232	1,350	60.9
인천	2,175	438	20.1
광주	1,099	878	79.9
대전	761	0	0
울산	1,325	717	54.1
경기	9,286	2,608	28.1
강원	1,416	1,192	84.2
충북	1,630	1,049	64.4
충남	2,425	1,431	59.0
전북	431	117	27.2
전남	1,899	1,340	70.6
경북	2,168	466	21.5
경남	3,270	1,535	46.9
제주	389	299	76.9
합계	40,302	16,973	42.1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학급 담당교사에 대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 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통합학급 담당교사 40,302명 중 16,973명이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미이수율 42.1%) 이에 따라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연수 강화를 확대하고, 통합학급 담당교사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연수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을 위한 1인당 연수 지원 예산

구분	연수 참가자 수	특수교사 연수 예산	1인당 예산
서울	1,761	392,371	222.81
부산	1,726	287,268	166.44
대구	671	773,235	1152.36
인천	1,568	51,765	33.01
광주	1,312	63,600	48.48
대전	381	78,349	205.64
울산	268	140,750	525.19
경기	288	258,000	895.83
강원	401	471,668	1176.23
충북	1,206	25,451	21.10
충남	1,390	842,995	606.47
전북	919	145,494	158.32
전남	418	372,608	891.41
경북	1038	341,645	329.14
경남	358	407,877	1139.32
제주	203	21,280	104.83
합계	13,908	4,674,356	336.09

특수교사들을 위한 연수 지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사들을 위한 연수 지원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연간 336천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1인당 연수 지원 예산은 시·도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대구, 강원, 경

남의 경우 1인당 1백만원 이상의 연수비를 지출하고 있음에 반해, 인천, 광주, 충북의 경우 1인당 5만원 이하의 연수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좌 확대와 더불어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① 근거

〈법〉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

〈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에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연 2회 이상 회의 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 요구 가능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제정 현황

구분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여부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여부	비고
서울	미제정	미제정	2009년 제정 예정
부산	제정 (제정일 : 2008.12.03)	제정 (제정일 : 2009.03.01)	
대구	제정 (제정일 : 2009.5.25.)	제정 (제정일 : 2009.5.25.)	
인천	제정 (제정일 : '09.03.31)	제정 (제정일 : '09.03.31)	
광주	제정 (제정일 : 2008.12.15)	제정 (제정일 : 2008.12.15)	
대전	미제정	미제정	제정 절차 중
울산	제정 (제정일 : 09.02.20)	제정 (제정일 : 09.02.20)	
경기	제정 (제정일 : 2008.12.)	제정 (제정일 : 2008.12.)	
강원	제정 (2008.12.01)	제정 (2008.12.01)	
충북	제정 (제정일 : 2009.4.17)	제정 (제정일은 지역교육청별로 다름)	
충남	미개정	미개정	개정 준비 중
전북	제정 (제정일 : 2009.5.6)	제정 (전라북도교육규칙에 포함)	
전남	제정 (제정일 : 2008.12.19)	제정 (제정일 : 2008.12.19)	
경북	미제정	미제정	추진중
경남	제정 (제정일 : 2009.2.18)	제정 (제정일 : 2009.2.18)	
제주	제정 (제정일 : 1994. 12. 30) *개정 2008. 12. 30	미제정	
합계	12개 시·도 제정	11개 시·도 제정	

법령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이행한 시·도는 11개 시·도로 나타났고,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교육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시·도는 서울, 충남, 대전, 경북 등 4개 시·도로 나타났고, 시·군·구 교육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시·군·구는 서울, 충남, 대전, 경북, 제주 등 5개 시·도로 나타났다.

자료 요청 시기가 '09년 7월이었으므로, 법률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는 '09년 말 내에 교육규칙 제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었다.

○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중 부모 또는 특수교사의 참여 비율

구분	위촉위원 인원 수	부모 및 특수교사 참여 인원 수	참여 비율
서울	6	2	33.3
부산	10	3	30
대구	7	2	28.5
인천	8	2	25
광주	10	1	10
대전	7	3	42.8
울산	8	4	50
경기	12	4	33.3
강원	8	3	37.5
충북	7	2	28.5
충남	7	5	71.4
전북	9	3	33.3
전남	8	3	37.5
경북	8	1	12.5
경남	8	4	50
제주	8	3	37.5
합계	131	45	34.4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위촉된 131명의 위원 중 부모 또는 특수교사의 수는 45명이고, 전체의 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경북의 경우 부모 또는 특수교사의 참여 비율이 10%안팎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심사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업무와 지역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특수교육 현장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현장의 학부모와 특수교사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데, 일부 시·도의 경우 위촉위원 중 부모 또는 특수교사의 참여 비율이 극히 낮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① 근거

〈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업무 :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확보
-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 배치
-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
-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수

구분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수	전담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서울	12,513	64	195.52
부산	5,043	41	123.00
대구	3,864	29	133.24
인천	4,088	50	81.76
광주	2,190	15	146.00
대전	2,714	14	193.86
울산	1,945	37	52.57
경기	16,024	138	116.12
강원	2,648	35	75.66
충북	3,246	60	54.10
충남	3,886	102	38.10
전북	3,009	45	66.87
전남	3,406	72	47.31
경북	4,160	64	65.00
경남	5,118	95	53.87
제주	1,153	14	82.36
합계	75,007	875	85.72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최근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 반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전담인력의 배치 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나 지침 없이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담인력 1인이 얼마나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 또는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통해, 전담인력 배치 비율에 대한 시·도간 비교를 실시해 본 결과, 특수교육대상자 수 대비 전담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된 곳은 충남지역으로 나타났고, 전담인력이 가장 적게 배치된 곳은 서울지역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그 배치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간 격차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담인력 확충에 필요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1개소당 연간 평균 예산(인건비, 시설비 제외)

구분	특수교육지원센터 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사업비, 운영비)	1개소당 평균 예산
서울	11	1,046,220	95,111
부산	6	2,193,855	365,643
대구	4	378,180	94,545
인천	6	237,542	39,590
광주	2	547,060	273,530
대전	2	185,660	92,830
울산	3	637,992	212,664
경기	25	1,260,000	50,400
강원	17	519,400	30,553
충북	11	1,489,000	135,364
충남	15	717,350	47,823
전북	17	1,076,000	63,294
전남	22	348,000	15,818
경북	23	1,339,400	58,235
경남	20	718,000	35,900
제주	2	224,742	112,371
합계	186	12,918,401	69,453.8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예산에 있어서도 시도 간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개소당 예산이 가장 많은 시도는 부산으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시도 간 격차는 3억4천만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덧붙여 전반적으로는 법률에서 위임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7가지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임을 볼 때 현재 각 시도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라는 간판만 달아놓은 채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 껍데기뿐인 지원센터도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하다.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사업 추진 현황

① 근거

〈법〉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
-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
-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홍보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2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발견 절차 등)

-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조기발견 홍보 횟수(교육기관 제외, 2009년 상반기 현재까지의 홍보 실적)

구분	특수교육지원센터 수	총 홍보 횟수	평균 홍보 횟수
서울	11	150	13.6
부산	6	0	0
대구	4	1	0.2
인천	6	12	2
광주	2	3	1.5
대전	2	1	0.5
울산	3	42	14
경기	25	80	3.2
강원	17	16	0.9
충북	11	109	9.9
충남	15	84	5.6
전북	17	4	0.2
전남	22	106	4.8
경북	23	88	3.8
경남	20	30	1.5
제주	2	35	17.5
합계	186	761	4.1

새 법률의 취지 중 하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련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나 복지체계 내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장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새 법률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에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발견·조기개입의 활성화를 위해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홍보활동이 보다 치밀하고 활발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으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도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별 1회조차 홍보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일부 시도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 통합교육계획 수립 현황

① 근거

〈법〉 제21조 (통합교육)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
-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음
-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각급학교 장의 통합교육계획 수립 비율

구분	통합교육계획 수립대상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학교	통합교육계획 수립비율
서울	2572	1658	64.4
부산	1224	1224	100
대구	1460	562	38.4
인천	744	640	86.0
광주	562	157	27.9
대전	649	634	97.6
울산	482	434	90.0
경기	1647	1502	91.2
강원	959	815	84.9
충북	928	719	77.4
충남	1238	1156	93.3
전북	1114	916	82.2
전남	1074	948	88.2
경북	3219	1184	36.7
경남	1838	1838	100
제주	284	210	73.9
합계	19,994	14,597	73.0

새 법률은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담고 있으며, 특히 통합교육계획수립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선 학교관리자들에게 이를 주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계획을 작성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시도에서는 계획수립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행정조치가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아)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현황

① 근거

〈법〉 제22조 (개별화교육)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별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개별화교육계획에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내용·방법,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포함
- 매학기별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통보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비율

구분	특수교육대상자 수	개별화교육지원팀 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비율
서울	7,530	5940	78.9
부산	3,329	648	19.5
대구	2,460	280	11.4
인천	2,975	1270	42.7
광주	1,273		-
대전	1,327		-
울산	1,405	1405	100
경기	16,023	1092	6.8
강원	1,743	511	29.3
충북	1,912	436	22.8
충남	3,010	3010	100
전북	1907	480	25.2
전남	2,496	345	13.8
경북	1,971	359	18.2
경남	3,783	1436	37.9
제주	702	702	100
합계	53,846	17,914	33.3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말 그대로 각 개별 특수교육대상학생마다 구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특수교육현장을 감안할 때 이는 무조건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말 그대로 팀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원 등의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등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존재할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사의 결과 100% 구성되었다고 보고된 시도가 무조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해당 지역 팀의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된 시도 중 상당수가 10~3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팀 구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매뉴얼 개발, 관리자·교원·학부모 연

수 등의 단기 대책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특수교육교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시 부모 제외 비율

구분	전체 개별화교육지원팀 수	부모제외 개별화교육지원팀 수	부모제외 비율
서울	5940	268	4.51
부산	648	83	12.81
대구	280	0	0
인천	1270	37	2.91
광주			
대전			
울산	1405	205	14.59
경기	1092	0	0
강원	511	73	14.29
충북	436	32	7.34
충남	3010	143	4.75
전북	480	83	17.29
전남	345	0	0
경북	359	3	0.84
경남	1436	0	0
제주	702	4	0.57
합계	17,914	931	5.2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학부모 참가 문제는 단순히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행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 해당 학생의 교육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과정·현재 상황 등의 정보를 팀에 제공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 학부모 스스로도 학교의 교육목표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이 가진 의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조사결과를 볼 때 대다수의 시도에서 학부모들이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학부모들이 단순히 참여에 머

물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팀 내에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기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현황

① 근거

〈법〉 제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실시

〈시행령〉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 자격소지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실을 특수학교에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구분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수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전문인력 수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서울	3,092	291	10.63
부산	2,348	58	40.48
대구	2,007	28	71.68
인천	1,311	-	-
광주	1,146	232	4.94
대전	1089	91	11.97
울산	999	105	9.51
경기	4,263	550	7.75
강원	697	73	9.55
충북	1,799	150	11.99
충남	1,321	157	8.41
전북	725	44	16.48
전남	1,703	155	10.99
경북	780	36	21.67
경남	2,239	125	17.91
제주	268	20	13.4
합계	25,787	2,115	12.2

새 법률상 중·고등과정의 학급당 정족수가 7명이하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전반적으로 각 시도별 해당 전문인력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는 대부분의 시도가 중등교원이외에 별도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사결과는 사실상 특수학교에 배치된 관련 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진로 및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학급내의 중등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관련프로그램개발·전문적인평가·지역사회연결·전문적인기술교육 등을 위해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에서 특수교육교원 확대를 비롯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 비율

구분	특수교육지원센터 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 센터 수	협의체 구성 비율
서울	11	4	36.4
부산	6	6	100
대구	4	1	25
인천	6	6	100
광주	2	2	100
대전	3	1	33.3
울산	3	2	66.7
경기	25	25	100
강원	17	17	100
충북	11	4	36.4
충남	15	12	80
전북	17	13	76.5
전남	22	6	27.3
경북	23	14	60.9
경남	20	20	100
제주	2	0	0
합계	187	133	71.1

진로 및 직업교육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해야 하므로 협의체 구성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시도별 상당한 차이를 짐작해 볼 때 이 부분은 관련기관의 계획도 의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각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알아서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협의체 또한 개별화교육지원팀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구성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이에 협의체가 모두 구성되고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 시도 내 각 부처간의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이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부처간·민간기관간 연계를 통해 모범적인 협의체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시도별 시군구별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 전공과 설치·운영 현황

① 근거

〈법〉 제24조 (전공과의 설치·운영)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시행령〉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
-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함
-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고등부 과정 이상 설치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율

구분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 수	고등부 과정 설치 특수학교 수	전공과 설치율
서울	25	15	60.0
부산	9	4	44
대구	8	3	37.5
인천	7	4	57
광주	2	2	40
대전	4	3	75
울산	3	2	66.7
경기	20	9	45
강원	6	4	67
충북	9	5	55.6
충남	5	4	80
전북	8	3	37.5
전남	7	2	28.6
경북	7	6	85.7
경남	7	5	7
제주	3	2	66.6
합계	130	73	56.2

현재의 전공과는 그 실효성에 있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교육중심의 전공과운영,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 지역사회 협력체 부재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재의 전공과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공과 무용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새 법에서는 전공과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자립생활교육 등 전반적인 전환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실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공과 모델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 순회교육 운영 현황

① 근거

〈법〉 제25조 (순회교육 등)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

〈시행령〉 제20조 (순회교육의 운영 등)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 순회교육대상자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의 설치·운영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전체 순회교육대상자 중 법정 수업일수 위반 비율

구분	순회교육대상자 수	법정 수업일수 미만 수업받는 대상자 수	순회교육 법정일수 위반 비율
서울	120	46	38.3
부산	382	0	0
대구	124	0	0
인천	56	0	0
광주	161	0	0
대전	66	5	7.6
울산	38	0	0
경기	900	0	0
강원	276	99	35.9
충북	284	29	10.2
충남	464	0	0
전북	327	119	36.4
전남	765	0	0
경북	319	61	19.1
경남	410	0	0
제주	208	99	47.6
합계	4,900	458	9.3

위반 비율은 광역시에 비해 도 지역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도 지역은 지역범위가 넓음에도 순회교사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순회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 별도의 지원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순회교육은 가급적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도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순회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특히 도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시급히 필요할 것이다. 덧붙여 광역시 중 서울지역만 유독 위반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당장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타)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운영 현황

① 근거

〈법〉 제26조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일제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

〈시행령〉 제21조(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종일제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비율

구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수	종일제 운영 유치원 수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
서울	34	11	32.4
부산	11	10	90.9
대구	3	0	0
인천	16	2	12.5
광주	6	0	0.0
대전	14	2	14.3
울산	4	3	75.0
경기	51	11	21.6
강원	7	2	28.6
충북	7	1	14.3
충남	18	8	44.4
전북	8	0	0
전남	16	6	37.5
경북	3	0	0
경남	7	0	0
제주	1	1	100
합계	206	57	27.7

유치원 종일제는 유아특수교육강화를 위한 시급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새 법에서는 종일제를 운영할 경우 별도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 특수학급의 규모도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종일제 운영비율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시도에서는 아예 종일제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곳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장애유아교육은 의무화된다. 이에 유치원 특수학급의 확대와 맞물려 종일제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유치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의 종일제 운영 비율

구분	유치원 과정 설치 특수학교 수	종일제 운영 특수학교 수	종일제 운영 비율
서울	26	18	69.2
부산	11	8	72.7
대구	3	3	100
인천	5	5	100
광주	3	2	66.6
대전	4	4	100
울산	2	2	100
경기	27	17	62.9
강원	7	7	100
충북	9	7	77.8
충남	4	4	100
전북	5	4	80
전남	6	3	50
경북	4	4	100
경남	5	5	100
제주	3	3	100
합계	124	96	77.4

특수학교의 경우 그 특성상 유치원 특수학급에 비해 종일제 운영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남 등 일부 시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파) 특수교육기관의 학급 설치 및 교원 배치 현황

① 근거

〈법〉 제27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유·초·중·고 → 4·6·6·7인 기준 1학급 설치

〈시행령〉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함

-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특수학교 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구분	특수학교의 학교급별 과정 수	특수학교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 학교급별 과정수	법정정원 준수율
서울	119	60	50.4
부산	34	11	32.4
대구	22	15	68.2
인천	30	13	43.3
광주	15	7	46.7
대전	19	7	36.8
울산	13	11	84.6
경기	96	50	52.1
강원	32	32	100
충북	41	37	90.2
충남	20	11	55
전북	64	37	57.8
전남	29	11	37.9
경북	31	21	67.7
경남	31	24	77.4
제주	14	14	100
합계	610	361	59.2

새 법률의 학급당 법정정원 규정은 장거리 통학문제 해소 및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교육이 가능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법정정원 준수율은 59%에 머물고 있어 과밀학급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는 유입인구가 많은 광역시 및 경기도, 특수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충남·전남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는 특수학교 수는 많음에도 정원초과 학급이 많은 이유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율

구분	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수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급당 법정 정원 준수 학교 수	법정정원 준수율
서울	587	430	73.3
부산	123	71	57.7
대구	68	34	50
인천	309	-	-
광주	55	31	56.4
대전	174	48	27.6
울산	96	57	59.4
경기	1,092	1050	96.2
강원	292	241	82.5
충북	220	165	75
충남	122	77	63.1
전북	61	32	52.5
전남	346	281	81.2
경북	359	324	90.3
경남	409	397	97.1
제주	63	36	57.1
합계	4,376	3,274	74.8

일반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대전, 전북, 제주지역은 비슷한 조건의 타 시도에 비해 유독 법정정원 준수율이 낮은 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 공립학교의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준수 현황

구분	공립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정원 수	공립학교 배치 특수교사 수	공립학교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서울	8,392	2,098	1,344	64.0
부산	4,445	1,111	765	68.9
대구	2,729	683	410	60
인천	3,587	896	539	60.2
광주	1,752	354	339	95.8
대전	2,318	580	291	50.2
울산	1,590	398	181	45.5
경기	13,034	3,258	1,358	41.6
강원	2,415	604	523	86.6
충북	2190	548	332	60.6
충남	3,535	883	603	68.2
전북	1763	585	532	90.9
전남	2,773	693	441	63.6
경북	2,179	544	446	82
경남	4,590	1,147	802	70
제주	886	222	168	75.7
합계	58,178	14,604	9,074	62.1

위의 과밀학급 문제와 연동되어 교사의 법정정원 준수율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는 그간 정부의 공무원정원동결방침으로 인해 특수교육교원의 정원이 사실상 동결되면서 시도별 특수교육기관 마저 거의 늘어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확대 문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덧붙여 울산의 경우는 과밀학급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았음에도 교원확보율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상당수의 특수교육기관내에 정규교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므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현황

① 근거

〈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 / -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제공
- 보조인력 제공
-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 제공
- 취학편의 위해 통학차량지원, 통학비지원, 통학보조인력지원 등 통학지원대책 마련
-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 설치·운영
-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운영 등 제24조(치료지원)

- 국가 면허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소지한 사람
-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음

제25조(보조인력)

- 보조인력수급계획 수립, 보조인력 채용·배치 등 보조인력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 보조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 구비

제27조(통학 지원)

-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 통학비 지급
-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 보조인력의 역할 :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 담당

제8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 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인당 1인 이상 배치.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인당 1인 이상을 배치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치료지원 대상자 1인당 치료지원 예산

구분	치료지원대상자 수	'09년 치료지원 예산	1인당 치료지원 예산
서울	1,432	2,160,000	1,508
부산	563	2,236,000	3,972
대구	119	198,000	1,664
인천	256	355,000	1,387
광주	95	328,000	3,453
대전	377	273,000	724
울산	160	2,425,000	15,156
경기	503	1,080,000	2,147
강원	256	180,000	703
충북	386	1,542,000	3,995
충남	273	249,000	912
전북	242	209,000	864
전남	286	1,155,000	4,038
경북	265	612,000	2,309
경남	549	847,000	1,543
제주	143	205,000	1,434
합계	5,905	14,054,000	2,380.0

각 시·도별 치료지원 대상자 1인당 치료지원 예산을 조사한 결과, 울산이 15,156(천 원)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 충남, 전북의 경우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새로운 법률에 관련서비스 규정을 신설되면서 제공되는 학교 치료지원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해 지역별로 운영형태나 제공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치료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적절한 치료지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치료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치료지원 서비스 형태, 전담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보다 적절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 수

구분	총 학급 수	특수교육보조원 수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 수
서울	3,408	1,654	0.49
부산	741	567	0.77
대구	1,132	394	0.35
인천	592	527	0.89
광주	346	497	1.44
대전	308	403	1.31
울산	1,366	298	0.22
경기	2,136	1,257	0.59
강원	456	295	0.65
충북	956	356	0.37
충남	590	358	0.61
전북	715	342	0.48
전남	498	309	0.62
경북	654	473	0.72
경남	1,658	562	0.34
제주	293	197	0.67
합계	15,849	8,489	0.5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은 평균 0.5명이며 지역별 편차는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광주와 대전 지역은 1학급당 특수교육보조원 수의 평균이 각각 1.44명 1.31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울산이 0.22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광주의 경우 특수교육보조원 497명 중 224명이 무급으로, 타 지역에 비해 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이 사항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기준, 역할, 배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한 특수교육보조원의 확대와 특수교육보조원 인력풀 체계 마련 등 보다 효과적인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현황

구분	특수교육대상자 수	1인당 통학시간이 편도 1시간 이상인 특수교육대상자 수	통학시간이 편도 1시간 이상인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서울	12,513	334	2.7%
부산	5,043	141	2.8%
대구	3,862	104	2.7%
인천	4,088	139	3.4%
광주	2,190	122	5.6%
대전	2,714	23	0.8%
울산	1,945	94	4.8%
경기	15,638	376	2.4%
강원	2,646	160	6.0%
충북	3,246	124	3.8%
충남	3,941	185	4.7%
전북	2,859	80	2.8%
전남	3,406	292	8.6%
경북	4,160	231	5.6%
경남	5,118	146	2.9%
제주	1,124	68	6.0%
합계	74,493	2,619	3.5%

조사 결과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74,493명 중 2,619명으로 3.5%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경우 8.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울산의 경우 0.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을 위해 통학비 지원이나 통학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거리 통학의 근본적인 원인인 특수교육기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이다.

거)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 현황

① 근거

〈법〉 제33조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제34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 초·중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하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시행령〉 제32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4. 관리실
 5. 편의시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이행 모니터링 결과

○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

구분	등록 장애인 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
서울	380,307	100,000,000	262.9
부산	159,244	146,000,000	916.8
대구	106,969	106,000,000	990.9
인천	121,269	561,000,000	4,626.1
광주	62,514	85,000,000	1,359.7
대전	64,886	96,000,000	1,479.5
울산	45,182	158,000,000	3,497.0
경기	447,540		0.0
강원	91,324	41,000,000	449.0
충북	85,507	178,000,000	2,081.7
충남	116,560	186,000,000	1,595.7
전북	123,655	44,000,000	355.8
전남	135,837	0	0.0
경북	152,368	20,000,000	131.3
경남	163,019	128,000,000	785.2
제주	27,626	14,000,000	506.8
합계	2,283,807	1,863,000,000	815.7

각 시도별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 등록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을 비교하였으며, 이는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은 제외한 수치이다.

조사 결과, 인천의 경우 4,626.1원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경기와 전남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지원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낮은 수준이며, 지역별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지원 근거가 생겼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지원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아직까지 각 시·도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개발과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의 확대와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록 및 지원 현황

시도	설립 주체	대상 시설 수	등록 시설 수	지원 현황		지원 예산(연간, 총액)
				공공시설 지원 시설 수	예산 지원 시설 수	
서울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부산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대구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비인가) 1곳 : 30,000천원 지원						
인천	민간(개인) 설립	3	1		3	424,500,000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기타 설립					
	합계	3	1		3	424,500,000
광주	민간(개인) 설립	0	0	0	0	0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0	0	0	0	0
	기타 설립	0	0	0	0	0
	합계	0	0	0	0	0
대전	민간(개인) 설립	1	1		1	24,000,000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1	1	0	1	24,000,000
울산	민간(개인) 설립	2	1		1	118,000,000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2	1		1	118,000,000

시도	설립 주체	대상 시설 수	등록 시설 수	지원 현황		지원 예산(연간, 총액)
				공공시설 지원 시설 수	예산 지원 시설 수	
경기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강원	민간(개인) 설립	0	0	0	0	0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평창)	1	1	1	1	250,000,000
	기타 설립(평창)	1	1	1	1	5,000,000
	합계	0	0	0	0	0
충북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0	0	0	0	0
충남	민간(개인) 설립	1	1	1	1	27,111,000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기타 설립					
	합계	0	0	0	0	0
전북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전남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경북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경남	민간(개인) 설립	-	-	-	-	-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	-	-	-	-
	기타 설립	-	-	-	-	-
	합계	-	-	-	-	-
제주	민간(개인) 설립	1	1		1	6,000,000
	지자체, 공공기관 설립					
	기타 설립					
	합계	0	0	0	0	0

계속교육의 욕구가 있거나 학령기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장애인 등의 평생교육지원은 공교육 차원의 지원이 부재하였으며, 대부분 민간차원의 소규모 평생교육기관(장애인야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법률을 통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등록 및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성인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운영난 해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역별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현황 파악과 지원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현황 파악과 지원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제주 지역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 1개소를 등록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2개소를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미등록 기관을 포함하여 총 3개소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연간 총 424,500,000원을 지원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이 월등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록 절차가 까다롭거나 온전히 마련되지 않아 민간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장애인 야학 등)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담인력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록 및 지원 절차와 체계가 명확히 갖추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사 결과의 의의와 향후 과제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요구하였던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절충하여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여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에 법 문구대로 구체화되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및 16개 시·도의 법률 시행 노력과 의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

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시·도간 격차가 심각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상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법률 미준수의 원인

1)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미흡

2007년 5월 26일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08년 5월 26일 이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법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후속대책마련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속에 제시된 사항들을 교육현장에 혼란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30여 가지 이상의 항목들이 중앙정부차원(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했으며, 이를 토대로 각 시·도로 위임된 사항들은 자의적인 해석이나 혼란 없이 정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말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어졌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그리고 2008년 3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 등으로 이어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추진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학교 중심의 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침과 법규를 폐지 또는 정비한다는 학교자율화 조치 논의가 있어왔으며 구체적인 실천으로 학교현장에 존재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고 6월 중에 13개 규제 법령 조항을 정비한다는 학교자율화 조치가 2008년 4월 15일 발표되었다.

발표된 학교자율화 원칙과 추진 전략 속에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는 유아교육, 개인 과 지역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등의 경우 국가기능유지라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실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속에 명문화된 다양한 내용들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시되어야할 중앙정부차원의 세부적인 지침들이 제시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발생시켰으며, 이러한 문제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16개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현실의 차이와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법이행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행·재정적 지원 강화 의지 부족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표한 국립특수교육원 현식방안에서 밝혔듯이 국립특수교육원이 중앙특수교육지원센터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여건 지원과 인력지원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중앙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며,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 교과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제시된 비용추계라도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교육의 경우 행·재정적 집행 권한이 '08년도부터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됨에 따라, 예전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나 정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특수교육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지되어오던 사업들은 자취를 감추어 모두 시·도교육청 역량에만 맡겨진 상태이며, 교과부에서는 2010년도 국립학교에 대한 장애인 교육지원과 대학의 장학생 지원에 대한 예산만 책정된 정도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10년도부터 유치원,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해야 하며,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통학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지원에 대한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법률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교육권연대 등에서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법률의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각 시·도교육청에만 떠넘기지 말고,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최소한의 특수교사인력의 확보 역시 공무원정원 동결 및 감축이라는 이명박정부의 원칙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62.1%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며,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질적인 교육권확보를 위하여 제시된 학교급별 학급당 정원 조정 역시 국가

차원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맡겨져 있는 상황으로 특수학교의 경우 학급당 법정정원 준수율은 59.2%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장애학생의 교육을 국가가 나서서 차별을 방조하고 있으며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이명박정부의 특수교육 정책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행정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명박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3) 지방으로 이양된 특수교육 정책과 재정 집행의 권한

학교자율화 조치에서 정부에서 개인과 지역에만 맡길 수 없다고 발표 했듯이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과 제정은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특수교육 부분을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도별 특수교육 정책과 지원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를 보면 전체 1,000점 중 특수교육 정책의 내실화 및 지원실적 부분은 20점으로 2%에 불과하여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한 방법은 시도별 특수교육정책과 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이기에 다음 선거에 대비하여 장애인교육은 투자 대비 즉각적인 효과기 미약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 과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영어교육 등에 투자를 많이 하기에 장애인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양된 특수교육정책과 재정집행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4) 특수교육 행정 담당자들의 의지 부족, 이해 부족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행정 담당자들이 존재하지만 특수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전문직 중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가가 전체 232명중 110명으로 44.8%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군·구 교육청의 여타 업무를 중복하여 맡거나 이동이 잦기 때문에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행정을 지원해야하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특수교육 전문직 확충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에 규정된 세세한 조항들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데 있어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법률의 제정 목적과 의의에 맞게 문제 상황을 해석해주고 해결 방안을 마련 해주지 못하는 행정지원시스템의 미비로 나타나고 있다.

5) 수월성 향상, 경쟁 강화, 입시위주의 일반교육 환경

특수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 평등교육의 관점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환경이 지배하면서 특수교육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학력향상에 매몰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일부 현장의 문제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학력향상을 위한 학생간의 경쟁을 넘어, 학교간의 경쟁, 교육청간의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서 학업성취도 평가시마다 언론에 보도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평가참여 배제 및 대상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평가참여의 문제와 교육청 및 학교의 평균점수를 올리기 위하여 성적부진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에 배제시키려고 하는 문제들은 정부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특수학교 교육과정도 일반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보완교육과정이 아니라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적합한 대안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며 그 명칭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지만, 2008년 2월 개정된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보편성만을 강조하고 일반교육을 지향하는 형태로 개정이 되었으며, 2009년 개정교육과정(미래형교육과정)이 개정되고 나면 더 더욱 학력이 준거가 되는 학교장면에서 장애학생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위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법률 미준수의 원인을 살펴보았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해답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스로 밝힌 학교자율화조치 추진전략의 원칙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과 지역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의 경우 국가기능유지라는 기본원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해답을 찾는데 있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법률 준수 및 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1)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배치 기준, 시설·설비 기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양식 등에 관한 사항
- 진로 및 직업교육 운영 지침
 - 자립생활교육 신설에 따른 각급학교의 운영 계획
 - 일반학교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 지원 계획
- 영아의 무상교육 지원 지침
 - 영아의 무상교육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 계획
-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 운영 지침
 - 종일제 운영 시간, 운영 방법, 담당 인력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 지침
 -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보조기기 지원, 정보접근지원 등에 관한 지원 범위, 관리 등 세부 운영 사항
-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침
 - 인력 배치, 시설·설비 기준,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
-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침
 - 등록 절차, 지원 범위, 등록 양식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

예를 들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현재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특수교육 순회교사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260명인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시도별 총액임금제가 시행이 되고 교육행정직에 대한 정원의 조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될 것이므로 시·도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할 지방교육행정공무원(치료지원 인력, 심리진단 인력, 직업재활인력 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지침이나 후속 대책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운영 매뉴얼, 각종 문서 양식 등 특수교육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각종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 및 직업교육의 경우,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자립생활교육 영역을 진로 및 직업교육의 한 영역으로 포함시켰는데, 단위 학교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의 범위 확장에 따른 지원 방안과 교수·학습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관련된 시설·설비를 확충하거나 담당교사의 연수를 실시하는 등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시·도교육청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과 방안이 후속대책 등을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 몇몇 시·도교육청은 영아의 교육 지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있다.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 영아학급 담당교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영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영아의 무상교육 지원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와 같은 사항들이 일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여전히 인력의 부족 문제, 추가 인력에 대한 자격 문제 등에 대해 합의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고, 종일제 운영 시간, 종일제 운영에 따른 업무 조정 방법 등 아직 추가적으로 방침을 정해 운영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 있으나, 정부 차원의 세부 추진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대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경우,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특수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규정으로 간주하였지만, 막상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크게 학교 현장이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

있으며, 서비스를 중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관련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영역별 세부 운영 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부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영역별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절차, 운영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일선 교육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혼란을 줄이고 단위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법률에서 처음으로 규정한 서비스 지원체계로서, 여기에 많은 장애인 대학생과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치·운영 방안, 인력 배치 방안, 인력의 자격 기준, 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 지원의 범위 등 수많은 사항들이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대학에서만 이와 같은 센터가 유의미한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형식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거나 담당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역시,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을 위해 학교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민간 장애인 교육기관을 양성화하고자 하였으나, 막상 법률 시행 이후에는 평생교육사 배치 문제, 운영비 지원의 범위 문제 등으로 인해 민간 장애인 교육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을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할 것인지 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담당에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갈팡질팡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만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 법률을 통해 마련된 서비스 지원체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즉각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

현재의 특수교사 공급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 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정 정원 확보로 법률 미 준수 현황을 해결해야 한다.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별표2를 개정하여 특수학교 교사 수(현재 8,403명임)를 법률 규정에 맞게 대폭 확충하여 법률 미 준수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교원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법령 제정 방안>

구분	내용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마다 1명의 비율로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현재 각급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법정정원대비 64.5%에 불과한 실정.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부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특수교육교원 충원 계획이 미비한 실정.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국가의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교원 배치 등에 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 확충이 불가피함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각급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수교육교원을 특별하게 충원하도록 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꾀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립 각급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교원의 특별 충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함 나. “특별충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국·공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특수교육교원을 특별하게 증원하는 것으로 정의 다. 특별충원은 법이 시행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각급학교에 두어야 하는 특수교육교원 정원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 준수를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총 5,908인을 증원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900인을 증원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0년도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유치원) 및 특수교육교원(중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각각 2,058인, 1,374인을 증원하도록 함. 한편, 국·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학생 3명마다 특수교육교사 1인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충원하도록 함																																								
특수교사 충원 인원	<table><tr><th></th><th>2010</th><th>2011</th><th>2012</th><th>합계</th></tr><tr><td>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td><td>2,192</td><td>2,192</td><td>2,194</td><td>6,578</td></tr><tr><td>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td><td>13</td><td>13</td><td>14</td><td>40</td></tr><tr><td>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td><td>370</td><td>370</td><td>372</td><td>1,112</td></tr><tr><td>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td><td>655</td><td>655</td><td>655</td><td>1,965</td></tr><tr><td>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td><td>226</td><td>226</td><td>228</td><td>680</td></tr><tr><td>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td><td>300</td><td>300</td><td>300</td><td>900</td></tr><tr><td>합계</td><td>3,756</td><td>3,756</td><td>3,763</td><td>11,275</td></tr></table>		2010	2011	2012	합계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2,192	2,192	2,194	6,578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13	13	14	40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370	370	372	1,112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655	655	655	1,965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226	226	228	68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300	300	300	900	합계	3,756	3,756	3,763	11,275
	2010	2011	2012	합계																																					
공립 일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2,192	2,192	2,194	6,578																																					
국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13	13	14	40																																					
공립 특수학교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370	370	372	1,112																																					
유치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655	655	655	1,965																																					
고등학교 의무교육 추진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226	226	228	680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	300	300	300	900																																					
합계	3,756	3,756	3,763	11,275																																					

<공립의 각급 학교의 국가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항목	인원 수	변경안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7,96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51,232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142,597	
특수학교 계	8,516	+ 5500명 이상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11,622	
총계	321,934	

3) 특수교육 행·재정적 집행 권한의 중앙정부로의 환원

교육자치 및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된 특수교육 행정 및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로 환원시키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 재정 지원 계획 수립

정부 차원에서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별회계법률을 제정하여, 향후 5년간 매년 5천억원씩 특별 재정을 확보하고, 법률 집행에 필요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별 회계 법률안”이 그 사례인데, 이 법률안을 바탕으로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별도의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4조1항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별표1”의 개정을 통해 일반교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교육을 유아교육비처럼 별도의 특수교육비로 규정하여 법률 집행에 필요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측정항목 변경 및 특수교육비 신설에 따른 측정항목 등을 제안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1항 관련 별표1의 측정항목 변경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4조1항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별표1” 중 측정항목	측정항목 변경안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등	교직원인건비, 학교교육과정운영비, 교육행정비, 학교시설비, 유아교육비, 방과후학교사업비, 재정결함보전, 특수교육비(추가) 등

<특수교육비 관련 측정항목 제안>

측정항목		비고
특수교육비	가. 장애학생 학비지원	장애영아 및 전공과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의 무상 교육 비용 지원
	나. 특수교육교원 인건비 보조	특수학교, 특수학급,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인건비 보조 등
	다. 특수교육기관 교육력 지원비	특수교육기관의 운영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등
	라. 특수교육 환경 개선비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시설·설비 지원 비용

5)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특수교육 행정 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교육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과별 정원만큼의 인원 확충),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 부서 설치.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전문직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전문직 정원 규정에 특수교육전문직의 경우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특수교육지원센터 →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 →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 체계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중앙특수교육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의 내실화 및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 기관으로 위상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평생교육 지원 및 시·군·구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시·도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특수교육정책 의견 수렴 기구 활성화

법률에서 근거하고 있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위원 구성에서부터 회의 내용, 회의 운영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아직 특수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기구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당초 법률 제정 취지에 맞도록 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운영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대폭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등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로 위원 재정비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일상적 의견 수렴 활동도 함께 추진될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매월 1회 이상의 정례화된 논의기구 운영)

7) 특수교육 정책 및 행·재정 지원, 특수교육법 이행 점검 모니터링 활성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수준을 확인하고, 이행 강제를 제안할 수 있는 상시적 특수교육 정책 모니터링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미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주당 박은수 의원실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시적 모니터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정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 3 부>



장애인의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교육권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교육권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장)

I.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

1. 배경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기회의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소외·배제·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노력과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었으며,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 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해,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2. 구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① 총칙 ② 차별금지 ③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④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⑤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⑥ 벌칙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차별의 종류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간접차별이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 장관은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수 있다.

II. 교육 분야에서의 차별금지

1. 의의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보장해 오고 있다. 특히 작년에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원칙적인 선언을 넘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와 적극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규정함으로써 외형상 장애인의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과 학교급간 전달체계의 공급 불균형 그리고 재정적 이유와 동 법률들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 규정이나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 등 강제력이 약하여 여전히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권리구제가 여타 법률들과 비교하여 강력하여 극단적으로는 위반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의 교육관련 규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조항은 차별금지(제13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제14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조(차별금지)는, ①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전학 거절 금지,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 준수 의무, ③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거절 금지, ④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금지, ⑤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 ⑥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모욕·비하 금지, ⑦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 요구 금지, ⑧ 학업시수 위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① 교육책임자에 대해 정당한 편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제1항 각호의 수단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동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교육기관을 제3조 6항에서 유·초·중·고 및 대학교, 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보육시설,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그 밖에 교육기관을 정하도록 하였고, 그 적용 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재외교육기관, 연수기관, 중앙교육연수원,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원활한 교수-학습 수행을 위한 장애학생 대상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제공,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의 이동 및 접근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수단 제공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적용범위는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교육기관은 장애인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고 나머지는 3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장애인교육권의 보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교육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교육기관으로의 진입과정과 진입 후 교육기관 내에서의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기회에서의 차별’과 ‘교육환경에서의 차별’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육자체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의 한 과정으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장애인의 교육기회평등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금지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대한 거부 금지, 전학 강요 금지, 전학 거절 금지와 이를 위반시 위에서 언급된 구제절차가 진행되어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교육환경에서의 차별’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차별의 한 종류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였을 시에도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의 부여를 통하여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Ⅲ.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성과 및 평가

1. 교육영역에서의 진정사건 접수현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작년 한해동안 교육 영역에서 발생한 진정사건을 살펴보면, 시험평가에서의 편의제공(34.5%), 시설물 접근 및 이용(27.6%), 수업 등 교내활동의 배제(18.9%) 순으로 제기되었다. 교육 영역에서의 진정 제기는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 구별 없이 모두 발생하고는 있으나, 특히 국·공립학교에서는 주로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9건중 10건(34.5%)을 차지한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시험평가의 편의제공과 관련한 진정사건이 총 29건중 14건(48.3%)을 차지하였다.

2. 주요진정사례

1) 뇌병변과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00대학교 00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에 응시하였음. 그러나 지금까지 00대 대학원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불합격자는 한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후 박사논문 작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음(권고).

2) 피해자는 A예술중학교로부터 발달장애가 있으며 특수학급 출신이라는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 및 입학에 거부하였음. 이 문제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수차례 문제제기하자 교육청에서는 현재 피해자가 다니는 B중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여름방학전일까지 임시적으로 피해자를 A예술중학교에 다니도록 하되 기간이 종료하면 양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들은 후에 최종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학생이 학교 적응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조사중 해결).

3) 피해자는 지적 장애아란 이유로 학교시험, 현장학습에서 배제 되고 있음(조사중 해결).

4) 학교측에서는 교양과목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형태의 점자파일로 된 교재 유인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또한 학교 웹사이트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움(조사중 해결).

IV.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과제

1.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은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정당한 편의제공은 간접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차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간접차별 여부를 먼저 판정하고, 그 이후 간접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간접차별이 의제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차별로 판단한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간접차별 금지를 총론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각각의 차별영역에서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정당한 편의의 제공 거부를 차별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접차별 이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 간접차별 금지 조항을 사문화된 조항 혹은 선언적 조항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차별판단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인정해준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2. 권리구제의 한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와 이에 대한 불이행시 법무부의 시정명령과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에 따른 권리구제에 있어서 법무부의 시정명령은 공익적 영향, 정당한 사유, 다수의 피해자, 반복적 불이행, 고의적 불이행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제32조의 장애인 개인에 대한 비하·모욕 금지와 같은 조항은 사문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법원의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사건을 제외하고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

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지속성, 반복성, 보복성, 내용 및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악의적 차별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입증책임의 배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장애차별과 관련하여 차별판단을 받기에 유리하며, 법원의 임시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각종 기관 및 시설, 기업 등 각 사회분야에서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 행정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V. 맺음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은 새로운 내용들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또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야 했지만 편견이나 재정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것들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 역시 국가의 시혜나 복지 차원에서의 혜택 혹은 교육기관의 권한이 아닌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파악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 변화와 과제

김 은 주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 변화와 과제

김 은 주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지원과장)

I. 들어가며

지난 2008년 5월 26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특수교육법은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법률로서, 특히 특수교육대상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수교육법은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특수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기초하여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제와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 지원을 핵심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법률이행에 따른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 영역 15개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수시·점검하고 있으며, 연도별 과제에 따른 추진 실적을 분석한 뒤, 16개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특수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들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만 5세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점

에서 오늘 개최되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 교육 변화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 생각된다.

우선 주제발표자들이 발표한 것처럼 특수교육법의 시행이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적지 않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현재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법률 시행에 따른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와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II. 법률 시행 이후 정책추진 현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08~’12) 계획」정책의 추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가.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지원

장애영아의 무상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08년에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요구 및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09년에 장애영아학급 시범운영 및 지원 모형 개발을 추진하였고,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의 실제’라는 주제로 유치원 특수학교(급) 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93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95명으로 총 288명으로 조사되었다.

※ 정책연구학교 : 인천성동학교, 의정부 희망학교, 원주청원학교, 구미혜당학교

※ 특수교사 양성대학의 장애영아교육 관련 교육과정 강화 요청 공문 발송(특수교육지원과-110, 2008.5.13)

나.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2010년부터 확대되는 만5세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구

체적인 방안을 발표('09. 10)하였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 의무교육 실시 시기 및 대상자 범위, 취학절차를 적극 홍보·안내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교육기관의 내실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특수교육 여건 구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연계하여 교육여건을 갖춘 보육시설 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시 :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 조정을 위해 학급 증설 및 교원을 증원하고,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 확대 배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 2010년 특수교사 정원 361명 확보 및 880개 특수학급 증설 계획 추진

다. 장애인의 고등교육 강화

'08년 전국 19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①학생선발제도, ②교수·학습 지원, ③시설·설비 등의 영역별로 나누어 평가하였고,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장애학생 학습 여건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확대 설치('08년 31개소→'09년 64개소) 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의 중도탈락율이 대폭 감소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 대학 장애학생 중도탈락율 : 4년제 대학교('05년 28.3% → '09년 5.1%), 전문대학('05년 12.4% → '09년 3.7%)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확보 : 23억('09) → 28억('10)(22.6% 증액)

라. 장애성인교육 지원 확대

학령기에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해 '09년 특별교부금을 지원(969백만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별로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교재·교구 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성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및 운영모형 개발연구를 충남교육청에 위탁하여 수행 중에 있다.

※ 2009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61개 기관 및 시설, 1,833백만원

마.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특수교육 개념체계 재구축

합리적인 특수교육 정책 수립 및 적정 예산 집행을 위해 3년 주기로 전수 또는 표본 조사에 의한 특수교육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08년, '11년), 특별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개념에서 관련서비스라는 부가적인 자원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환함으로써,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 특수교육 실태조사 지표 개발 및 예비조사 실시('10년)

2. 학령기 아동의 통합교육 내실화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시·도별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학급 당 인원 수를 감축하고 있고,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5년 간 300학급씩 총 1,500학급이 증설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해 유치원 193명, 초등학교 944명, 중학교 487명, 고등학교 210명 총 1,834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09.8월말 기준), 향후 수요조사를 파악하여 순회교육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 특수학급수(개급)/급당학생수(명) : 4,697/6.3('05) → 5,204/6.2('06) → 5,753/6.1('07) → 6,352/6.0('08) → 6,924/5.7('09)

나. 일반교육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육의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격교육연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합교육 관련 연수기회를 연차별로 확대하고 있으며(60시간 이상 연수 이수율 '08년 : 15% → '09년 : 27.1%, '09년 8월말 기준), 2009년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교구개발·적용 등을 위해 전국 59개 학교를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 연구를 위한 일반교사 연구회는 시범운영 단계로 모두 19개(회원 466명)가 운영되고 있으며, '09년 신입생부터 모든 양성과정의 교원은 교직과

목의 교직 소양 4학점 중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있다.

다.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우수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부터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크게 강화하였고, 시·도교육청 교원연수원과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등에 특수교육교원을 위한 일반교과 교육 직무연수 개설 권장,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관련 연구 기회 확대, 특수교육 교원 간 통합교육 관련 멘토링제도 활성화, 양성과정 및 현직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통합교육 관련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특수교육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무시험검정 기준 : 과정별(유치원, 초등, 중등, 체육, 직업교육) 전공과목 30학점('09년 이전 입학자) → 42학점,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기타 대학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포함('09년 이후 입학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학교단위평가 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도 6개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정리되는 2010년에는 장애유형별로 보다 세분화된 평가조정 시범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1~2012년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에 대한 시·도별 교원 연수 실시와 더불어 우수 운영학교를 발굴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2012년에 단위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6개 연구학교 : 보림초(부산), 부평서중(인천), 주성중(충북), 천안서초(충남), 낙안초(전남), 물금고(경남)

마.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장애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여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초·중·고 교과용 도서 장애이해 관련 내용 보완자료를 마련 중에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사회적 협약체결을 통해 '08년~'10년까지 총 3편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드라마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대한민국 1교시' 수업 실시 및 '장애이해 UCC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마이 프렌즈' : 2009.4.20. KBS2 TV 방영, 총 200만명의 청소년 시청, 7,409편의 방송소감문 접수

※ '굿 프렌즈' : 2010.4.20. 공중파 방송 예정

3. 특수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별 1개 이상씩 전국에 18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담인력은 특수교사, 직업교육담당자, 치료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877명이 배치되어 있고, '08년에 대비 305명이 증가하였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배치 수 : 272명('07) → 572명('08) → 877명('09)

※ 시설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운영비 등을 위한 438억 예산지원('09)

※ 특수교육지원센터 성과보고회 개최('09.8.24~25) 및 운영 매뉴얼 개발('09.12월말 배부 계획)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치료지원의 연차적 적용에 따라 '09년에 치료지원이 제공되는 학년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과정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10,883명이었으며, 이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평가된 학생은 7,458명으로 나타났다.

치료지원의 방법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치료사 배치, 유관기관 활용, 바우처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도록 하였다. 치료사는 전국에 172명이 배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료실은 682개가 설치되어 있다. 치료사가 배치된 경우, 1인당 연간 계약금액은 평균 2천만원 수준이었으며, 학생 1인당 바우처 비

용은 월 10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치료지원 제공 유관기관은 전국에 1,515개, 바우처 활용 가능기관은 1,863개로 파악되었고, '09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치료지원 총 예산은 14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09년에 특수교육보조원은 8,245명 배치되었으며, 이 중 유급 특수교육보조원은 6,056명,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 등 무급 특수교육보조원은 2,189명이었다. 또한 전국 150개 특수학교에 522대의 통학버스가 배치되어, 23,606명의 재학생 중 15,116명(64%)에게 통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장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배치 체계 마련

장애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산모수첩이나 양육수첩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상담지원이 가능한 기관들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였으며, 모든 교원이나 의료진, 행정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혜택과 정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영아 선별 및 진단 평가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하였고('08), '09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역할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라. 종일반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특기·적성 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09년 지원 현황은 종일반 183학급, 방과후학교 7,343학급 등 총 7,526학급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학중 프로그램을 7,826개 과정을 개설하여 43,303명이 참여하였고, 향후에도 방학중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통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08년은 현장중심 직업교육과정 운영 시범학교를 시·도교육청별 1개교씩 총 16개 학

교에 적용하였으며, '09년에는 특수학교 내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직업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5개의 특수학교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자립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전문계 고등학교 통합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전공과의 확충 및 운영 내실화,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설치 확대,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적합화,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 2009.12월말 발표 예정

Ⅲ. 나가며

이상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계획·추진하고 있고, 연도별 실적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해 미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제 발표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 시행 과정에 있어 시·도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이는 향후 세부 사업별 구체적인 점검과 이행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계획된 목표 달성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특수교육법은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나 관련인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제정된 이상적인 법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법 시행을 통해 장애인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가족, 교원 등 모든 관계자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접근해 나갈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특수교육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 영역 15개 과제에 대해 수시·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법률 시행에 따른 장애인의 교육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특수교육 행정적 지원 분야 토론**

김 성 애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의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특수교육 행정적 지원 분야 토론

김 성 애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특수교육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법적인 토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특수교육의 제반 사항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하겠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으로 한다.)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및 생존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는 가? 본 토론자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찾아보기 힘들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오늘의 내용에서도 토론자의 그러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과 삶의 질을 보장할 구체적인 특수교육 지원 내용이 교실과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실행되려면 특수교육법에서 제시된 모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행·재정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발표에서 이미 밝혀졌듯이,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우리의 교육 현장은 법상에서 언급된 내용을 실행할 별 다른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자는 국가가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고도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본질적인 노력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본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을 위한 행·재정의 지원이 아주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내용을 행정적 차원을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재정적 지원에 관한 논의는 그러한 행정적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지원 내용의 재정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제공 절차가 매우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토론자는 특수교육법이 가지는 목적

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키워드 몇 가지를 나름대로 선정하여 그것에 대한 행정적 지원 내용을 언급하기로 한다. 향후, 본 토론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역할에 따라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지원 체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후로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의 확립에 대한 의식이 이전 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하게 된다. 이것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조기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그들의 발달 과업 성취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조기발견 및 지원 체제의 실현을 위한 행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행정적인 지침의 마련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의 발견에서 지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체계에 따른 행정 주관자, 업무의 절차 과정 및 내용, 주관 기관 등.
- 장애의 발견에서 지원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협력체제와 그 과정상의 운영을 위한 행정 지침(예: 홍보를 위한 담당자와 홍보할 대상 및 기관과의 협력; 진단 및 평가를 위한 행정 담당자와 진단 및 평가 인력들;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협력에 관한 운영 지침 등등.)

2.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그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법 제22조제1항에는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그 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화교육계획의 실행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대상자 선정 시에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의 결정과 개별화교육계획에서 이루어질 내

용 결정 과정상의 중복이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영아 특수교육의 무상 지원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에서 나타난 영아 특수교육 대상자에 비하여 영아 교육을 지원 받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향후 영아 학급을 설치할 비율은 유아 특수교육을 위한 학급 설치율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아교육의 중요성이 현장에 반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아 특수교육을 위한 행정지원 내용에는 교육과정의 개발, 교사양성 및 수급계획, 그리고 영아교육기관 형태에 따른 교육 지원(현재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영아 교육지원 모형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과 그에 따른 행정 지원 내용의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4.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특수교육 지원서비스는 특수교육의 효율적인 측면과 특수교육대상자의 삶의 질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각급 학교장이 지원할 부분과 교육감이 지원할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업무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행정 지원이 구체적인 지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지침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영역과 그에 따른 구체적 관련 서비스 지원
- 학교장이 지원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지원 전달 경로와 그에 따른 행정 지원
- 교육감이 지원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전달 경로와 그에 따른 행정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 담당자, 및 행정 지원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협력체제 구성과 운영

5. 유치원 특수교육의 의무교육 실천

본 발표에서 밝힌 조사 연구에 의하면, 현재 유치원 특수교육의 수혜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것은 유치원 특수교육의 의무교육 기관이 매우 적다는 것과도 같다. 2010년 임용할 교사 수는 26이고, 게다가 향후 5년 동안 신설될 유치원 수 또한 한 자리 수 %에 머무를 것으로 조사되어 국가가 의무교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보육시설 역시 특수교사의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고, 게다가 교사의 대우가 취약하여 2010년부터 실시되는 유치원 특수교육 의무교육 시행에서 많은 만5세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의무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보호자가 유아 특수교육 의무 이행 간주를 하도록 하는 규정과 행정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보육 시설에서의 교육 지원에 대한 운영 방안은 물론이고 교육의 질적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을 위한 행정 지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의무교육을 위한 홍보
- 의무교육 (예비)대상자의 파악:
- 의무교육 대상자 명단을 위한 사전 진단·평가 절차 규정
- 대상자 파악을 위한 관계 부처 간의 구체적인 협력
- 의무교육 기관의 확립: 일반 (공사립)유치원 내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 유아 특수교사의 수급에 따른 행정 지원
- 보육시설에서의 의무교육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지원:
- 유아특수교사 배치 과정 및 처우
- 교육과정 운영 및 감독
- 보육과의 연계 및 협력

6. 통합교육

특수교육법이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강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각급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의 실행이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행정 지원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특수학급 미설치 각급학교의 특수교사 배치 의무화
- 통합교육 운영 계획의 수립과 그 실행 방안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배치 및 담임 선정에 관한 내용: 학부모 참여 등
- 통합학급에서의 교육과정 수립 및 실천을 위한 학교 행정 지원
-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의 수행능력 향상 지원
- 통합교육을 위한 교수 실행 능력
- 통합교육 교육과정 운영 능력
- 통합학급 담임의 인센티브 내실화: 행정업무 경감, 특수교사와 동등한 처우 등
- 통합학급 학생 수의 적정화
- 통합교육 연수: 특수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의 특수교육 연수 의무화 등
- 통합교육 감독 및 장학에 관한 행정 지원

7.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의 지원 확대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규모가 이전 보다 상당히 커진 것에 비해 현재 업무 인력의 부족과 자격 요건의 미비 등으로 업무 추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법상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운영 또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토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행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에 따른 기구 조직 및 전문화
- 업무 특성에 부합되는 전문 인력의 적정 배치 및 자격 요건
- 지역사회와 특수교육 기관 및 전문 인력 협력체제 구성과 협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한 경 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권 변화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

한 경 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주제 발표에서 제시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한 조사 내용은 그 동안 국회에 보고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이외에 특별한 현황 파악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각 시·도의 특수교육 실행 노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각 시·도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만을 수합한 제약이 있지만 장애인계와 특수교육계 전반에서 뜨거운 기대를 모아온 특수교육법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였다는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의 시행까지 함께 이루어져 온 것을 감안한다면 이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토론자는 주제 발표에서 제기한 문제들과 향후 과제에 대한 동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중앙정부 및 각 시·도의 법 준수 의지 및 능력의 부족

이 조사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은 시·도간 특수교육 인프라 및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집행 노력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도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¹⁾. 특히, 특수교육예산 투입 수준의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기타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비

1) 조사된 내용의 일부 수치가 비현실적인 것을 감안한다면 교육청에서 무책임하게 조사에 응한 것인지 아니면 실체를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을, 비정규직 특수교사의 비율의 차이 등 세부적인 특수교육 실시 사항에 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예산의 부족만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 주제 발표문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국가가 제정한 법률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은 결과이며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정부 차원의 “의지박약”, 또는 그 것이 아니라면 “심각한 능력의 부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수교육법 제정 이후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며 미흡한 수준이고, 각 시·도 역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의적(편의적) 적용으로 결국 모든 부담은 일선 학교에 떠 넘겨지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중앙정부와 각 시·도의 이런 모습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던가 서로를 탓하는 구태의 책임 전가로 보일 수밖에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책임의 방기”로 해석되어야 옳다. 특수교육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의 상황은 제반 장애인 이슈나 특수교육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지 못하고 외면되는 분위기를 외적인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자세의 전환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재정 지원을 강구하라는 주제발표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여전히 표류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만인이 알다시피 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법 제정 이전의 허울뿐이었던 상태를 바로잡고 구체적으로 그 역할과 위상을 규정하여, 가히 한국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커다란 기대를 갖게 되었고, 예산의 집행이나 인력 수급의 문제, 그리고 체계적인 전달 체계의 수립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공감대 역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 2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현재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과거와 같이 “설치”에 그치고 있고,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업무 지침은 여전히 부재의 상태이다.

최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서” 개발 연구(미발간)

의 내용을 보더라도 극히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구성 방법과 그 역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의 내용이 없으며, 다른 운영 방안 역시 실제 현장에서 따를 수 있는 수준의 지침을 전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서비스 제공²⁾을 위한 ‘지역내 유관기관 협력 체제의 구축’이 운영 방안이라면, 실제로 지역사회 유관기관은 무엇인지, 어떠한 협력을 해야 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 추진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의 가이드라인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지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탓으로 돌려야하는가? 보다 근본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수요자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연구물을 내놓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특수교육전달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일종의 “Control Tower”라고 할 수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아직 그 설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은 어찌보면 특수교육법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전담인력의 배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으로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특수교사로서의 명칭을 부여하고 이들을 위한 채용하는 방식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특수교육교원의 배치를 학생 수 기준을 포함하여 특수교육전달체계상의 필요 인력을 감안하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특수교육 교원의 법정 정원확보 없는 특수교육법의 공허한 집행

이 조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엄연한 사실은 바로 특수교육 교원의 법정 정원 미확보의 문제이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채 70%³⁾가 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대부분 비정규직 특수교사가 메우고 있다. 특수교육법의 실질적 준수를 위해 많은 수의 특수교사가 증원되어야하는 상황에서, 법 제정 이후 오히려 특수교사의 신규 채용 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지적한 중앙정부 및 각 시·도의 의지가 얼마나 없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2) 사실 상 조사 내용에서 관련 서비스 중 치료지원을 위한 예산만을 밝힌 것은 매우 큰 한계이다. 치료 지원이 원활하게 제공되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함께 파악했어야 함이 옳다.

3) 사실 전체 62.1%(특수학교 59.2%)라는 수치 또한 비현실적이다.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수 많은 특수교육지원센터나, 미취학 유예 장애 아동, 그리고 장애 영유아 교육, 진로직업전문인력, 전공과 전담 교사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교원의 비율은 훨씬 못 미칠 것은 자명하다.

<최근 4년간 특수교사 신규 채용 인력 수-전국 기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고*
유아특수	23(2)	27	10	26	
초등특수	285(14)	244(15)	132(9)	156(13)	경기'09->'10: 14(1)-> 50(3)
중등특수	352(30)	414(27)	189(10)	226(16)	경기'09->'10: 14->63

()의 숫자는 장애인 전형, *는 경기도의 증가

위 표가 보여주듯이, 유아특수교육 분야의 교사 채용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교육법의 또 다른 특징인 장애 영유아 교육이 어찌 가능할 것이며, 중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증설은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미확보는 단순히 교원 수급 정책의 차원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특수교육현장의 비정규직 양산의 문제는 최근 제안된 인턴특수교사 제도와 더불어 교육행정 당국의 무책임하고 지극히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진다.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교사의 법정 정원 미확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정말 된다고 보는지 이에 대한 중앙정부는 물론이거니와 각 시·도의 책임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4.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전공과의 문제

주제발표의 내용에서는 특수학교의 전공과 설치율을 전국 평균 56.2%로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제발표자는 실험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전공과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사실 토론자가 주목하였던 것은 주제 발표문에는 누락되었지만 실제 조사 내용의 하나였던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률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 평균 53.9%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공과 자체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56조(전공과의 설치)⁴⁾에는 전공과

의 목적을 “전문기술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조항을 따르자면, 현재 전공과가 전문기술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정신지체학교 등에 설치된 전공과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학령기 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전문기술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입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비교적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대학특례입학이나 취업 등으로 진로를 확장해나가지만 장애의 정도가 깊은 학생들은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결국,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졸업 후의 성인기 삶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지 ‘우려’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2010학년도 전공과 학생 선발방법 변경 및 입학전형 일정을 안내한 공문⁵⁾에 의하면 특수학교에 설치한 전공과에 대해 과정 졸업 예정 학생을 과다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전면 개방하여 타학교 졸업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위해 공개 전형 방법을 체계화하고 여러 학교에의 중복 응시를 제한하도록 전형 일자를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얼핏 타당해보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전문기술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경우 전공과 입학이 상당히 제한될 ‘우려’를 낳는다. 전공과에서 실시하는 전문기술교육의 문제는 실제로 학교 이후 성인기 삶을 준비하는 성인교육의 차원까지도 포함하여 국가의 특수교육 책무성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보았을 때,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학교 이후 교육기회를 가로막을 수 있는 현재 추세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 ‘다양한 실험적 모델’이라는 표현에는 모든 장애학생의 학교 이후 교육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전공과 내실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공과의 확대 설치를 포함한 프로그램 개발(단지,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산업분야만을 고민하는 데에서 나아가)까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법의 강조 사항 중의 하나인 진로직업교육 강화의 한 실천적 방안이기 때문이다.

4) 초·중등교육법 제56조(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대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5) 초·중등교육과-29897

5.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장애영유아 교육과 더불어 특수교육법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인 장애성인평생교육에 있어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성인교육 시설의 부족을 풀어낼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수학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공중심의 속성을 갖지 않고 성인의 평생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능력과 요구 수준을 가진 장애인 평생 교육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제한 받아온 장애성인들에게 야학이나 민간 교육기관의 교육기관 보다 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취할 수 있는 수 많은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은 이미 십여년 전 부터 국립특수교육원(1998)⁶⁾에서도 주장하였듯,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성인만을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기 보다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교육당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은 제기되어 왔다. 교육부(2002)⁷⁾의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하였던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대학의 이용이나 교육인적자원부(2006)⁸⁾의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서도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은 또한 고등학교 이후의 전환과정으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학생들은 통상 3년 과정의 고등학교 과정보다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등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되 지역의 고등교육기관(4년제 대학, 전문대학)에서 교육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연계적 전환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증명하는 형태의 졸업증서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기능적 학업 기술, 사회 및 여가 생활 참여, 성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 및 사적 서비스 기관의 이용 훈련 등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사실 교육당국의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으로 앞서 논의한 전공과의 문제와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국립특수교육원(1998). 장애인 교육·복지실태 국제비교. 안산: 저자

7) 교육인적자원부(2002).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 서울: 저자

8) 교육인적자원부(2006).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서울: 저자

6. 특수교육의 책무성 점검의 필요성

주제발표자는 교육당국의 법 집행 의지 부족과 같은 문제의 이유의 하나로서 수월성을 추구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위주의 일반교육환경의 문제를 들고 있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주지의 사실로서 받아들여질 정도로서 기실 특수교육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맞다고 판단된다.⁹⁾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우리 특수교육계에서도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 즉 책무성을 외국의 사례에서 떠올리는 개념적 상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한 것들은 대부분 교육당국의 차원에 국한되는 것들이지만, 이젠 실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력을 점검할 때이다. 이는 특수교육법이 형태적으로 특수교육전달체계만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결국 장애학생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학업 성취력 등 실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주제발표 내용의 근거가 된 조사 방법이 특수교육 현황에 대한 객관적 비교에 치우친 양적 지표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법 시행 이후 질적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다. 자칫, 양적 지표들만이 앞으로의 우리나라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 방향으로 흐를까 하는 걱정이 기우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안고 출발한 특수교육법에는 물론 법리상의 문제나 교육현실을 감안했을 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먼저 법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사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옳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제발표문이 근거로 삼는 이 조사 내용의 가치를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국가 수준과 각 시·도에서 상시적인 점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9) 최근에 읽은 글이다. “핀란드의 교육 정책은 공부를 못 하는 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은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핀란드의 교육제도가 불리함을 만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돕는 시스템이라면 한국의 교육제도는 불리한 학생들을 가급적 일찍 탈락 시키는 시스템이다”. 박재원, 윤지은 공역(2009). 핀란드 교실 혁명(p.54). 비아북.



**법률 시행 이후, 2009년
교육현장에 나타난
주요문제들과 향후 과제**

김 효 송

(인천선인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법률 시행 이후, 2009년 교육현장에 나타난 주요문제들과 향후 과제

김 효 송 (인천선인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1. 법률 시행에 따른 교육현장의 기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 되면 교육현장은 보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확대되고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과 장애학생 및 특수교사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교육현장에서의 차별이 시정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가. 장애학생교육권확대

우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인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의 확대, 영·유아 무상교육 그리고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권 보장 등 법률에 해당 조항을 담고 있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특수학교(급)이 없어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장애학생의 당연히 교육받을 권리는 확대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나.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

교육과정과 관련서비스의 구분, 특수학급 학급당 인원수의 하향조정, 다양한 지원책의 강화 등 보다 질 높은 특수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를 했었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직업교육과 치료지원, 가족지원, 상담 등 특수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기대하였다. 교사는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고, 특수교육교원에 대한 각종연수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서 전문성신장의 기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다. 장애학생 및 교육 관련자에 대한 차별시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학생교육의 차별적 요소들이 줄어들고 차별이 금지되어 차별적 요소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장애에 따른 보장구와 교육보조기기 등의 지원이 의무화되어 장애에 따른 불편한 요소가 줄어들리라 기대하였다.

2. 법 시행 후 나타난 현장의 문제

법제정 후 장애교육권이 보장되고 특수교육이 한층 발전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1년이 지난 후 학교현장에서의 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의 법 준수여지미비와 준비미비로 인한 ‘과밀학급의 증가와 업무의 가중’이란 말로 정리 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10,000여명의 특수교사에 대한 증원요인이 발생하였고 법률의 안착을 위해서 해마다 특수교사를 대폭적으로 임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하여 시행이전에 비해 절반정도의 신규특수교사만을 임용하였다. 그래서 학교현장은 과밀학급 현상이 법률 시행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정확한 지침의 부재와 내용의 부재로 학교 일선현장의 특수교사에 있어서는 업무가중이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 적절한 지원과 운영지침을 통하여 처음 시행되는 법이 현장에서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에도 그 적절한 지원과 운영지침을 내리지 않았고, 각 시도교육청은 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준비부족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게 하였다.

가.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 무시와 장애교육권문제 발생

학급의 증설을 통한 특수교육의 질적 성장과 장애인교육권확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행정부는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싶다. 법에 의해서 10,000여명의 신규 특수교사 증원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 오히려 법률시행 이전에 비해 반 토막 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신규특수교사만을 임용하고 있다.

한편, 공립 초·중·고교원의 법정정원 준수율은 88.2%인데 반해 공립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 준수현황은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법률위반행위로 인하여 많은 학교현장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박탈

법률위반으로 인하여 학교현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위협받고 특수교사의 업무는 가중되는 문제를 나타내었다. 법률 제 27조 제1항의 학생기준 인 유치원 4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기준을 지킨 학급이 현재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법정 정원 준수율은 고작 62.4%에 불과하고 특수학교의 법정 정원 준수율은 59.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낮은 법정 정원 준수율과 학급신설과 증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밀학급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근거리 학급이 없이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통합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순회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특수학교의 교원축소로 인한 교육의 질적 하락 우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잘못 제정된 시행령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든 시행령은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이 기준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하여서 특수학교의 경우 교원축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 등의 감각장애 특수학교의 경우 중복·중증 장애학생이 많고 개별적 학업능력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진

학하려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목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이 기계적으로 시행령을 적용하여 특수학교의 교원축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개정해 특수학교는 학생 수를 하향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시행령기준을 하향하여야 한다.

3)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

특수교육교원의 정원이 줄어들어서 필요한 특수학급의 증설이 어려워지자 시도교육청은 정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기간제교사를 배치해 이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배치는 학급을 증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지만 임시방편적 응급조치라 할 수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간제 특수교사가 늘어나는 것은 기간제교사의 신분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육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게 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필요한 교사의 수에 맞는 정교사를 배치할 수 있게 특수교육교원의 정원을 늘려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기능 상실의 문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 중 하나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현장을 지원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발전시킨다는 내용인데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 전담인력의 부족, 업무의 무지 등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장애학생의 진단평가·선정배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 치료지원, 교수학습지원 등 법이 명시한 지원들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학교현장에 업무를 넘김으로 인하여 특수교육교사의 업무를 가중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1) 진단 평가·선정 배치 문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진단·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교사에게 진단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종용하거나 학부모에게 병, 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와 함께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고 통보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학생의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통지서만 받았을 뿐 배치통지서를 받은 바 없다. 일반학교에 배치하더라도 일반학급 배치인지 특수학급 배치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④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진단·평가에 대한 규정(새 법률 제16조)>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교육기관 또는 보호자가 의뢰하여 학교에 배치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안내가 없고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거부 금지 조항에 의거 학구와 상관없이 개별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여 취학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 현장 학습과 관련서비스 지원기능의 상실 혹은 미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진단·평가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 치료서비스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충실히 하여 현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규정(법률 제11조)>

다. 특수교육교사의 업무과다와 업무혼란문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현장에 지원을 하여야 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나태와 업무방기, 시도교육청의 업무 내용 숙지 미숙 그리고 지원 없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처리가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왔고 또한 특수교육교사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 하느라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수교육교사의 업무과다 예를 들어보면 치료지원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신청을 받고, 교육청은 신청 받은 치료비를 배부할 뿐 모든 집행에 있어 학교에 일임하고 있어 교사에게 행정적 잡무의 부담이 늘어나게 하였다.

장애지원부서(담당자) 문제의 경우와 개별화지원팀 문제에서 보듯이 법에 대한 준비 없이 공문을 보내어 현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라. 기타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문제들

1) 시도 지역마다 확대되는 교육지원내용의 격차

장애인교육권연대와 안민석, 이상민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

여건 평가 결과를 보면 시도 교육간 격차가 심화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예산의 경우는 강원도는 3.1%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5.8%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예산의 편차가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설치율의 경우도 인천광역시의 경우 51.4%인데 반해 전라북도의 경우는 겨우 11.5%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시도 교육 간에 교육지원내용이 확대되어서 현장교육의 형평성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2) 특수교육보조원의 학교별 선발과 배치의 문제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특수학급교사가 혼자 선발과 예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한 학교에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어있다. 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은 특수교육보조원의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고 환경의 변화가 없어서 나태해 질 우려가 있다고 본다.

특수교육보조원 선발 및 배치를 교육청에서 하고, 3년~5년에 한번 씩 근거리 학교를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로부터 필요한 보조원의 수를 신청 받아 그에 합당한 보조인력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법 시행이후 현장특수교육을 위한 향후과제

가. 특수교육교사 법정정원확보와 장애인교육권 확보

특수교육교사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정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정정원에 맞도록 특수교육교사를 충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시행령을 고쳐 장애학생교육에 충분한 특수교육교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급당 학생 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학급을 시급히 증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충분한 전담인력배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담인력과 전문가가 필요하다. 겸직 교사형태로 운영하거나 실질적 인력을 충분하게 배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현장지원을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진단·평가를 위한 전문가, 치료지원을 위한 전문가,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총괄하기 위한 전문가 등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게 되길 바란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위한 운영지침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배치에 관한 기준이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등 매우 정교한지원이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준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간의 편차도 커지고 운영이 제 자리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법의 실현을 위한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지원

1) 특수교육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한 역할재조정 필요

특수학급교사의 경우 입학업무, 통합교육업무, 교육과정업무, 교외업무(직업교육, 사회적응교육 등), 보조원관리, 공익관리, 부모상담, 방과 후 업무, 예산집행 등등 수많은 잡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수’란 이름 붙인 모든 업무를 특수교사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특수교육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전에 장애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학생의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예산관련 행정적 업무는 행정실에서, 치료지원이나 장애아동 진단·평가 등에 관련된 업무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기적성 등은 학교의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업무경감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

특수학급교사의 경우 혼자서 업무와 학생지도를 하게 되는 경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이럴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절실하다. 현장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연수, 멘토 교사의 지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 특수교사에 대한 상담 창구 확보 등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법률 시행에 따른 각종 정책에 대한 국가단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적용

영·유아 의무교육의 확대, 장애 학생의 진단·평가, 순회교육, 치료지원, 가족지원, 보조원 운영, 통학지원, 직업교육의 활성화, 개별화교육운영 활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안, 평생교육, 장애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교사 연수 등 법률 시행에 따른 각종 정책들의 경우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관련 내용에 있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연구·계획하고, 지원하고 진행해야하는 과제들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제대로 안착되기까지 국가가 전체 일정을 계획하여 질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방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책무성을 방기하지 말고, 특수교육적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간 격차가 나지 않게 학교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교 여건 변화 및 장애학생 교육권 변화 분야

유 경 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장애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본 학교 여건 변화 및 장애학생 교육권 변화 분야

유 경 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공동대표)

2009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교육에 관련된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대부분 마지막에 “왜?”라는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았다. 각종 언론과 매체 그리고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접할 수 있었던 많은 소식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첫 번째가 장애인 교육이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이제는 장애인 교육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장애인 교육은 크게 바뀌지 못했고 오히려 장애인 교육권이 많은 부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에서 드는 의문은 현재의 장애인 교육 현상이 그렇게나 많이 변화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에서 드는 의문은 어떤 문제가 있어 장애인 교육은 쉽사리 바뀌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다. 물론 이 의문에 대한 답은 관련 전문가, 국가기관, 장애인 단체 등에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며 발표하는 내용들을 참고하면, 어떤 작용과 어떤 조건들에 의해 그리되었음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차별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것이며,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인가, 그리고 언제쯤 장애인이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은 얻기 어렵다.

토론문 서두에 굳이 개인적인 사설을 늘어놓은 이유는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늘 스스로 문답했던 의문들이 현 시점에서 더욱더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더 경과한 시점이라는 것이 큰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장애학생 학부모로써 가졌던 고민과

답답함이 이제는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하였으나 오히려 복잡한 심정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는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고 장애인 교육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가가 주된 논의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크게는 장애인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1. 장애인교육법 시행 이후 장애학생 교육권 변화

1)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여건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앞선 발제문을 통해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교육 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며, 대부분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두 발제문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듯이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법률 시행 이후 장애인 교육현장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아 부모들이 제정 과정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법률 이행이 순탄치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다.

장애인교육법은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늘 바래왔던 교육 지원들과 국가와 학교에 요구해 왔던 교육받을 권리들이 가득 담긴 법률이었다. 법률 제정 당시 이 법률이 현장에 온전히 적용되기에는 많은 진통을 격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얼마전 ‘전국 시·도 특수교육 여건 조사’에서 나타난 전국의 특수교육 기본환경과 장애인교육법 이행 수준의 결과는 예상보다 더욱 미흡하였다.

환영할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장애인교육법 시행 1년을 기점으로 법률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장애인 교육 현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후의 과제들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며, 조사내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

2) 장애인교육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장애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법률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 양상이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 제공되는 교육 지원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들이 생겨 법의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명분있는 요구사항이 되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장애인교육법에 근거하여 치료지원 확대 시행과 유급보조원 확대 배치, 원거리 통학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법적인 조항에 따라 관련 지원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교육청과 다소나마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었던 교육차별들이 차별의 금지 조항으로 명시되어 학교관리자들과 교사,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그리고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고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 및 연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다소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교육 여건 조성과 교육 지원 제공이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진단평가팀을 구성하여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실제로 학부모님들은 취학이나 진학을 앞두고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한 긴장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정보 부재로 혼선을 빚고 있다. 또한 유치원 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공립단설유치원을 확대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이 장애인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의 예산 삭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과정이 의무화되었지만, 고등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힘든 작업이지만, 어렵게 특수학급을 신·증설했다고 하더라도 정규교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교육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사실상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여전히 일선 학교나 교육청의 몇 개의 공간을 활용하여 치료교사들이 순회하면서 치료교육을 하거나 방학 중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가족지원의 명목 하에 부모를 대상으로 몇 차례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올 해 경기도교육청에 단설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이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5~8명의 상근인력이 상주하는 형태인데, 교육청에서는 일단 2011년에 1개소를 시범 설치하겠다고 하였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것에 비해 현실적으로 확보계획이 너무나 미비하여 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부모님들과 교사 모두 개별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이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아직도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구성되지 않고 있으며, 통합교사와 특수교사간의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통합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졸업한 이후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으며,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어 두려움에 떠는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장애인 교육 현장은 크게 변화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장애인교육법 시행의 문제점

장애인교육법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고 장애인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발제문의 '법률 미준수의 원인'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대부분 공감한다.

학교나 교육청에 법률에 따른 학생 수 준수나 학급증설, 교육 지원 등을 요구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세부지침의 부족, 중앙 정부 차원의 교사 동결,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다. 중앙 정부에서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대한 후속 대책을 소홀히 하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특수교육 정책과 재정 집행 권한의 지방으로 이양한 것은 아직까지 특수교육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외면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학교나 지역교육청에서 법률 이행에 대한 의무를 중앙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답답하지만 한편으로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들을 보면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발제문에

서술된 "개인과 지역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의 경우 국가기능유지"라는 현 정부의 원칙이 너무나도 생소한 장애인 교육 현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장에서 법률의 해석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법률에 명시된 교육 지원 근거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소극적인 법률 해석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거나, 지원 대상자가 한정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법률에는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기관을 특수학교에만 국한해서 적용하여,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전공과를 설치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공과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의 기대와 요구가 크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에 전공과가 신설된다면 부모님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면 장애아 부모들이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교육 지원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법률을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달리 해석하여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근거들은 과도한 것으로 이야기 한다.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세부지침과 행·재정적인 지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혼란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학교 현장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최근 학교관리자들에 대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지만 일부 관리자들은 장애인 교육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예산낭비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2. 장애인교육법 실효성 제고와 장애인교육권 보장을 위한 과제

장애인교육법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 역시 발제문에 제시된 “법률 준수 및 특수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에 동의하며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발제문에 제시된 방안들은 장애아 부모들을 포함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들과 일치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특단의 조치들을 실행할 것인가로 판단된다.

장애인교육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

장애아 부모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률에 따른 교육 지원들을 찾아갈 수 있는 매뉴얼 혹은 홍보물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부모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차별 사례들을 예시하고 대처방법들을 안내해주는 책자나 안내물이 제작·배포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특수교사, 통합학급교사)들에 대한 장애인교육법 이해 교육도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인 의무사항들을 이해하고 지켜나가고자 하는 일선 교사들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의 취지와 핵심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노력, 법률이 제대로 장애인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마치며

오늘 토론회는 장차법과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정부기관, 관련 전문가, 장애인 교육 주체 등이 참여하여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이다. 법률 시행과 더불어 지난 수년간 장애인 교육이 발전하고 변화하는데 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는 그 과정의 연속선상에 놓인 앞으로의 과제들을 이야기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의 논의가 장애인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의 의지에서부터 저 멀리에 있는 어느 특수학급의 한 아이에게까지 실질적인 변화를 안겨줄 수 있는 교육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 전 장애인문예창작단에서 진행한 시낭송회에서 와 닿는 시 한편을 접했다.

「밥은 먹었냐고. 먹을 거 혼자 먹을 줄 아냐고. ...중략...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냐고. 나라에서 돈 얼마나 받느냐고. ...중략... 나라에서 받는 혜택이 뭐뭐 있냐고. 비 오는데 왜 나왔냐고. 묻지 말고... 이 모든 말 끝에 ‘세상 많이 좋아졌지’ 라고 말하지 마요. 좋아진 세상이라면 당신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나도 당신에게 이런 말을 듣지 않겠죠.」

장애인 교육 여건이 수년전보다 나아진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그 과정들을 기록하고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장애인 교육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개선되었다고 해서, 많이 좋아졌으니 이정도로 만족하던지 그 이상은 감내하라는 식은 받아들이기 수 없는 것이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교육에서조차 배제되고 차별받는 장애인들이 존재하며, 장애인 교육 현장은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저런 교육을 제공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낯선,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교육받지 못하는 것이 낯선, 그리고 그만큼 좋아진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인 교육권 현황 및 향후 과제
- 장애인 교육권 보장방안 토론회 -

| 인 쇄 | 2009년 12월

| 발 행 | 2009년 12월

| 발행인 | **현 병 철**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926 | F A X | (02) 2125-9848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